

2022학년도

「배려와 나눔을 통해 미래의 꿈을 키우는」

#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고 산 중 학 교

<http://www.jb-kosan.ms.kr>



고산중학교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학교의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협조해주신 여러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어 사회활동 전반에 제약이 많이 따르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학교와 가정·사회에서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에는 결코 소홀하거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고산중학교에서는 모든 선생님이 한마음 한뜻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며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 중심의 창의적인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학년도에는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해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방향에 대해 안내하고 협의할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해 부득이 학교 홈페이지에 교육과정 설명회 자료를 안내하는 것으로 대체하게 됨을 널리 양해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탑재된 교육과정운영 자료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금학년도 교육활동 방향을 살펴보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유능한 인간 육성”이라는 교육목표를 두고 전문적인 역량을 지니신 선생님들께서 교과 특성 맞는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에도 만전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사물함 교체, 교실 LED전등 설치, 학생자치공간 구축, 학교복합자치공간 구축, 홈베이스 구축, 계단 미끄럼 방지시설, 교실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고 꾸준히 성장하는 데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과 협력이 있을 때 그 성과는 더 크고 가치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학부모님과 가족의 칭찬과 격려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성장해갈 수 있도록 저마다의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3. 23.

고산중학교장 정 해 수

# 학교 현황

1. 학교 현황	1
2. 학교 경영 방침	2
3. 2020 주요 교육 실적	2
4. 2022 교육과정 운영 계획	3
가. 교육과정 편제	3
나. 2022학년도 학사 일정	5
5. 2022학년도 학생출결상황 관리규정 안내	7
6. 2022 교외체험학습안내	12
7. 2022 방과후학교운영계획	20
8. 창의적체험활동 누가기록	21
9. 2022 동아리 부서편성	24
10. 학생자율동아리 운영 계획	25
11. 학생 봉사활동	26
12. 2022학년도 특색사업	27
13. 따뜻한 학교 운영	28
14. 기초학력(맞춤형 학습지원) 운영 계획	29
15. 연간 평가 운영 계획	30
16. 학생건강검사	42
17. EBS 온라인클래스 가입방법	42
18. 학교급식 안내	44
19. 교복안내	45
20. 2023 고입전형주요내용 및 일정	46
21. Wee 클래스 상담실 운영	50
22. 보건실 이용 계획	52

# 학부모 · 교직원 연수

1. 자유학기제의 올바른 이해 .....	54
2. 정보 윤리 통신 교육 .....	57
3. 선행학습 금지법 안내 .....	59
4. 청렴교육 연수 .....	60
5. 2022 교권보호 및 교원지원 안내 .....	61
6. 학교폭력예방 교육 .....	64
7. 아동학대, 가정폭력 예방교육 .....	68
8. 학생인권 증진과 인권 친화적인 학교 만들기 .....	72
9. 고산중학교 학교생활규정 .....	75
10. 자녀 성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 .....	95
11. 학생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	104
12. 장애 이해 및 장애 인권 교육 .....	106
13. 고산중학교 학부모회 .....	108
14. 학교배치도 .....	109

## 1

## 학교 현황

## 가. 학교 연혁

년 월 일	내 용
• 1952. 1. 19.	고산중학교 설립 인가(3학급)
• 1952. 6. 10.	고산중학교 개교(고산 향교)
• 1997. 3. 1.	특수학급(1학급) 인가
• 2019. 9. 1.	제27대 정해수 교장 부임
• 2022. 1. 5.	제69회 34명 졸업(졸업생 총수 10,761명)
• 2022. 3. 2.	신입생 입학(32명)

## 나. 학급 편성 및 학생수 (2022. 3. 2. 기준)

구 분	학 년	학 급 수					계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2	2	2	1	7	
학생수	남	16	17(1)	19	(1)	49(1)	
	여	16	12	18(1)	(1)	49(1)	
	계	32	29(1)	37	(1)	98(2)	

※ 괄호문자는 특수 교육 대상 학생수임

## 다. 교직원 현황

구분	교원				행정					계
	교장	교감	부장	교사	행정실장	주무관	영양사	조리종사원	교무실무사	
남	1		1	2		2				6
여		1	2	12	1	1	1	2	1	21
계	1	1	3	14	1	3	1	2	1	27

## 라. 시설현황

구분	교지(m <sup>2</sup> )			관리실	교과교실	홈베이스	특별 교실						
	대지	체육장	계				공용교실	특수교실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기가실	컴퓨터실
수량	11,940	10,200	22,140	4	7	3	1	1	2	1	1	1	1

구분	지원 시설										부속 건물			기타	
	시청각실	방송실	도서실	자료실	보건실	상담실	복합자치실	학생자치실	서고	신생활관	강당	샤워실	창고	화장실	음료수대
수량	1	1	1	1	1	1	1	1	1	1	1	2	2	16	4

## 2

## 학교경영방침

※ 교육지표 - 참되고 부지런하게 생활하자. 꿈을 심어주는 희망찬 교육

영역	교육목표	비고
학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꿈과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진취적인 학생</li> <li>○ 예절이 잘 갖추어진 학생</li> <li>○ 매일 독서하며 1인 1재능이 있는 학생</li> </ul>	
교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상 연구하며 노력하는 교사</li> <li>○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성실한 교사</li> <li>○ 꿈과 희망을 주는 열정적인 교사</li> </ul>	
학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에게 꿈을 심어주고</li> <li>○ 학부모님께 신뢰를 받으며</li> <li>○ 사랑과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li> </ul>	
인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추고</li> <li>○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유능한 인간</li> </ul>	

## 3

## 2021 주요교육실적

가. 2021학년도 졸업생 진학 현황

구분	전주 인문고	비평준화 일반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합계
학생수	3	16	14	1	34

나. 주요행사

월 일	행 사 내 용	월 일	행 사 내 용
21. 3. 2.	입학식 및 시업식	10. 12.	나태주시인과의 만남(3학년)
3.17.~3.19.	교육과정설명회 및 학부모 상담주간	10.14.~15.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6.3.~6.4.	오רות한 고을 완주 마을 읽기(1, 3학년)	10. 21	합동소방훈련
6. 8.	오רות한 고을 완주 마을 읽기(2학년)	10. 26.	1학년 교과통합수업
7. 9.	농어촌 중3 찾아가는 상담	11. 17.	허클베리핀뮤지컬
7. 16.	2학년 진로체험	12. 28.	설송제
9. 1.	전교생 119안전체험	22. 1. 5.	제69회 졸업식

## 가. 교육과정 편제

## 2022학년도 전체학년교육과정편성표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기본)	1학기 (자유)	2학기 (기본)	2학기 (자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과 (교과)	국어	68	68	68	51	68	68	68	68	
	사회/ 도덕	사회	51	51	51	34	0	0	34	34
		역사	0	0	0	0	51	51	34	34
		도덕	17	17	17	17	34	34	34	34
	수학	68	68	68	51	68	68	51	51	
	과학/ 기술/ 가정/ 정보	과학	51	51	51	34	68	68	68	68
		기술 가정	34	17	34	34	51	51	51	51
		정보	0	0	0	0	17	17	0	0
	체육	51	51	51	51	51	51	34	34	
	예술	음악	17	0	17	17	34	34	17	17
		미술	17	0	17	17	17	17	34	34
	영어	51	51	51	34	51	51	68	68	
	선택	한문	51	51	51	51	0	0	0	0
		생활외국어	0	0	0	0	0	0	0	0
		환경	0	0	0	0	0	0	0	0
보건		17	17	17	17	0	0	0	0	
진로와직업		0	0	0	0	0	0	0	0	
교과 시수 합계		493	442	493	408	510	510	493	493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활동	12	12	12	12	7	7	7	7	
	동아리활동	17	0	17	0	17	17	17	17	
	봉사활동	5	5	5	5	5	5	5	5	
	진로활동	17	0	17	0	5	5	5	5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합계	51	17	51	17	34	34	34	34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기존창체활동(~68)	0	0	0	0	17	17	17	17	
	창체순증	0	0	0	0	0	0	0	0	
	교과감축	17	17	17	0	0	0	17	17	
	학교스포츠클럽 시수 합계	17	17	17	0	17	17	34	34	
총 수업 시간 수		561	561	561	561	561	561	561	561	
자유 학기 활동 (교과/ 창체)	진로탐색활동	0	17	0	17	0	0	0	0	
	주제선택활동	0	17	0	85	0	0	0	0	
	예술체육활동	0	34	0	17	0	0	0	0	
	동아리활동	0	17	0	17	0	0	0	0	
	자유학기 시수 합계	0	85	0	136	0	0	0	0	

# 2022학년도 입학생3개년 중학교교육과정편성표

고산중학교

구분	기준 시수	총괄		1학년						2학년		3학년			
		편성 시수	증감 시수	1학기 (기본)	1학기 (자유)	전환 항목	2학기 (기본)	2학기 (자유)	전환 항목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과(군)	국어	442	408	-34	68	68		68	51	주17	68	68	68	68	
	사회/도덕	510	170		51	51		51	34	주17			34	34	
			역사	170							51	51	34	34	
			도덕	170		17	17		17	17		34	34	34	34
	수학	374	374		68	68		68	51	주17	68	68	51	51	
	과학/기술/가정/정보	680	374		51	51		51	34	주17	68	68	68	68	
			기술/가정	272		34	17	주17	34	34		51	51	51	51
			정보	34								17	17		
	체육	272	272		51	51		51	51		51	51	34	34	
	예술	272	136		17	0	예17	17	17		34	34	17	17	
미술			136		17	0	예17	17	17		17	17	34	34	
영어	340	340		51	51		51	34	주17	51	51	68	68		
선택	170	102	-34	51	51		51	51							
		한문		0											
		생활/외국어		34		17	17		17	17					
		환경/보건		0											
진로와 직업	0														
소계	3,060	2992	-68	493	442	51	493	408	85	510	510	493	493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306	52	-68	12	12		12	12		7	7	7	7	
	동아리활동		102		17	0	동17	17	0	동17	17	17	17	17	
	봉사활동		30		5	5		5	5		5	5	5	5	
	진로활동		54		17	0	진17	17	0	진17	5	5	5	5	
	소계		306		238	-68	51	17	34	51	17	34	34	34	34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창체활용(~68)	136	68	68							17	17	17	17	
	창체순증		0	0											
	교과감축		68	68	17	17		17	0	예17			17	17	
	소계	136	136	136	17	17	0	17	0	17	17	17	34	34	
총 수업 시간 수	3,366	3,366	0	561	476	85	561	425	136	561	561	561	561		
이수 과목 수				8	8		8	8		8	8	8	8		
자유학기활동	진로탐색활동	221~	34			17			17						
	주제선택활동		102			17			85						
	예술체육활동		51			34			17						
	동아리활동		34			17			17						
	소계		221~	221	0	0	85		0	136		0	0	0	0

★ 자유학년 편성 참고사항

1. 1, 2학기의 총 시수의 합이 221시간 이상(즉, 17시간 기준으로 한 13단위 이상을 편성)
2. 학기별 설정 영역에 대한 제한 없이 2개 학기에 걸쳐 4개 영역 설정
3. 교과(군)별 시간 배당(3년간 총 기준 수업 시수)의 20%범위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의 85시간(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수 포함) 범위 내에서 '자유학기 활동' 편성
4. 예술·체육 교과(군)를 활용하는 경우 예술·체육 활동으로만 편성
5.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용하는 경우 예술체육 활동의 체육활동이나 동아리 활동(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관련 프로그램)으로 편성

나. 2022학년도 학사일정

월	요일 주	1 학 기									월/누계
		월	화	수	목	금					
3	1		1	삼일절	2	신학기 적응기간	3		4		
	2	7	8		9	대통령선거	10		11		
	3	14	15		16		17		18		
	4	21	학부모 상담주간	22	학부모 상담주간	23	교육과정설명회	24	학부모 상담주간	25	학부모 상담주간
	5	28		29		30		31		1	
4	6	4	5	영어듣기평가 (1학년)	6	영어듣기평가 (2학년)	7	영어듣기평가 (3학년)	8		
	7	11	12		13	교과협의회	14		15	심리검사 (1학년)	
	8	18	19		20		21		22		
	9	25	26	1학기 1차	27	1학기 1차	28	1학기 1차	29	간부수련회	
5	10	2	소변검사(2,3)	3	학교스포츠클럽발표회	4		5	어린이날	6	재량휴업일
	11	9		10		11		12		13	
	12	16		17		18		19		20	
	13	23		24		25	자체공개수업	26		27	
	14	30		31		1	지방선거	2		3	
6	15	6	현충일	7		8		9	10	개교기념일	
	16	13		14		15	교과협의회	16		17	
	17	20		21		22		23		24	
	18	27		28		29	심폐소생술교육 (교직원)	30	1학기 2차	1	1학기 2차
7	19	4	1학기 2차	5		6	자체소방훈련	7		8	
	20	11		12		13		14		15	
	21	18		19		20		21	여름방학실시	22	
	22	25		26		27		28		29	
수업일수	1년		19	20		19		20		18	96
	2년		19	20		19		20		18	96
	3년		19	20		19		20		18	96

월	요일 주	2 학 기								월/누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8	22	1	2	3	4	5				
	23	8	9	10	11	12				
	24	15	광복절	16	17	18	19			
	25	22		23	개학	24	25	26		
	26	29		30	31	1	2			
9	27	5	6	영어듣기평가 (1학년)	7	영어듣기평가 (2학년)	8	영어듣기평가 (3학년)	9	추석연휴
	28	12	추석대체 휴무일	13	14	15	16			
	29	19		20	월요일 대체수업	21	교과협의회	22	23	
	30	26		27	28	학부모공개수업	29	30		
10	31	3	개천절	4	5	2학기 1차	6	2학기 1차	7	2학기 1차
	32	10	한글날대체휴무일	11	12	테마식현장 체험학습	13	14		
	33	17		18	19	합동소방훈련	20	21		
	34	24		25	26		27	28		
	35	31		1	2		3	4		
11	36	7	8	9	10	11				
	37	14	15	16	교과협의회	17	18			
	38	21	22	23	24	25				
	39	28	29	30	2학기 2차	1	2학기 2차	2	2학기 2차	
12	40	5	6	7	8	9				
	41	12	13	14	15	16	워크숍			
	42	19	20	21	22	학생회장단선거	23	사정회		
	43	26	27	28	설송제	29	30	겨울방학실시		
1	44	2	3	4	5	6				
	45	9	10	11	12	13				
	46	16	17	18	19	20				
	47	23	24	25	26	27				
	48	30	31	1	개학	2	3			
2	49	6	7	종업식,졸업식	8	9	10			
	50	13	14	15	16	새학년 교육활동 협의	17			
	51	20	21	22	23	24				
	52	27	28							
수 업 일	1년	16	20	20	20	19	95			
	2년	16	20	20	20	19	95			
	3년	16	20	20	20	19	95			
연간계	35	40	39	40	37	191				

가. 결석 : 학교장이 정한 등교 일에 등교하지 않은 경우로 질병, 미인정, 기타, 출석 인정 결석으로 구분한다.

- (1) **질병결석** : 질병으로 결석한 후 등교하게 되면 보호자는 학생 편에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의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결석은「**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제14조(출결상황) 별표 8(출결상황 관리)에 의거하여 '**질병결석**'으로 처리하며, 출결처리는 다음 내용과 같다.

가.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

- 1)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 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함.

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다)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감응할 수 있음**

(2) **미인정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등)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 정지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체포·도피·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결석

-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출석 인정결석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현역병 지원입대는 학생이 졸업 전에 입대하지 않도록 지도하되, 지원입대를 한 경우는 「병역법」 제73조에 따라 휴학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을 위한 출석일수를 충족한 경우, ‘기타결석’으로 처리 가능
  - ※ ‘지원입대’의 경우 신체검사 참여 등은 ‘기타결석’으로 처리함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8)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9) 경찰청 「소년업무규칙」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10)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 11)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위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의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나.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 (08:45)**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이며 단, 지각의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구분한다.

- 1) **질병지각** : 질병으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전화 또는 문자를 받은 경우로 병원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2) **미인정지각** : 늦잠, 태만 등으로 인해 학교에 늦게 등교한 경우
- 3) **기타지각**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 또는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지각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월·화·금 16:10, 수·목 15:15)** 전에 하교하는 경우이며 조퇴의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조퇴로 구분한다.

- 1) **질병조퇴** : 질병으로 인해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고 조퇴한 경우로 다음 날 병원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2) **미인정조퇴** : 담임교사의 허락 없이 조퇴한 경우
- 3) **기타조퇴**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 또는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조퇴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라. 결과 : 특별한 사유없이 수업시간의 일부(시작 후 5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결과 처리한다. 결석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 결과로 처리한다.

- 1) **질병결과** : 질병으로 인해 수업시간에 교과담당교사나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고 참석하지 않는 경우
- 2) **미인정결과**
  - 가) 수업시간에 교과담당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여 교사로부터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 나) 교사가 교실에 들어와 출석을 확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5분 이상 늦게 들어온 경우
  - 다) 수업이 종료되기 전에 교과담당(담임)교사의 허락 없이 교실을 나가 수업이 종료될 때까지 참석하지 않는 경우
- 3) **기타결과**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 또는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과로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

※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같은 날짜에 지각·조퇴·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미인정-질병-기타의 순서로 처리한다.)

※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 **지각·조퇴·결과 (단위학교에서 정한 기준은 전체 교사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괄되게 적용)**

마. 개근, 정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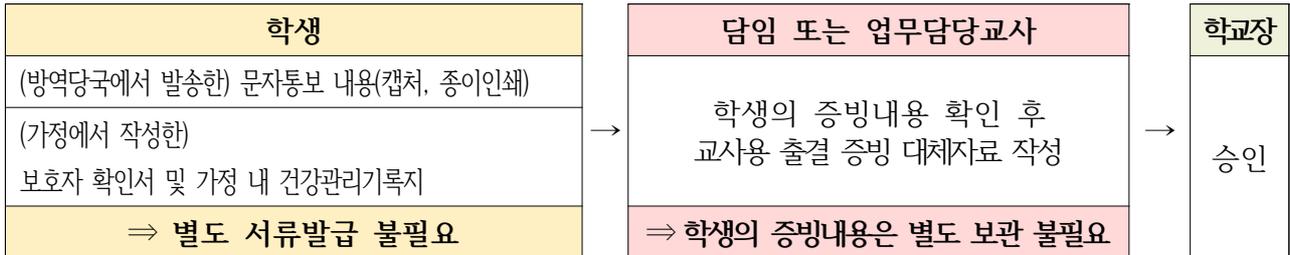
- 1) 개근: 해당 학년 동안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학생
- 2) 정근: 해당 학년 동안 결석 3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9회 미만인 학생

바. 국가 위기 감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출결관리

- (등교중지 대상 학생) 특정 학생이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 등교중지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진료확인서,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 【 대상 학생별 정의 】

- ※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예방 관리 지침**(중대본, 교육부)이 개정되는 경우, **사례별 정의 및 등교중지 관련 세부사항**(기간, 등교재개 요건 등)은 **해당 지침을 준수**하고,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확진 받은 학생**: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학생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 중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있는 학생
  - ※ 해외 입국자 중 '격리면제 대상자'의 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이 아니며, 세부적인 대상자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3판)' 참조
- **임상증상 발현학생**: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학생

### 【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일)에 열이 내려가고, 6.8.(월)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 **(예외)**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 (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31790호, 2021. 6. 2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2022. 1. 17.)

## 가. 훈령: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나.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교환학습 출결 처리
  - 기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교환학습
  - 방법: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 교환학습 실시 →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예)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1

### 교외체험학습 운영

-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 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1) 교외체험학습 승인일수 내 일반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운영방식 학교 자율 설정
  - 2) 위기경보 ‘관심,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o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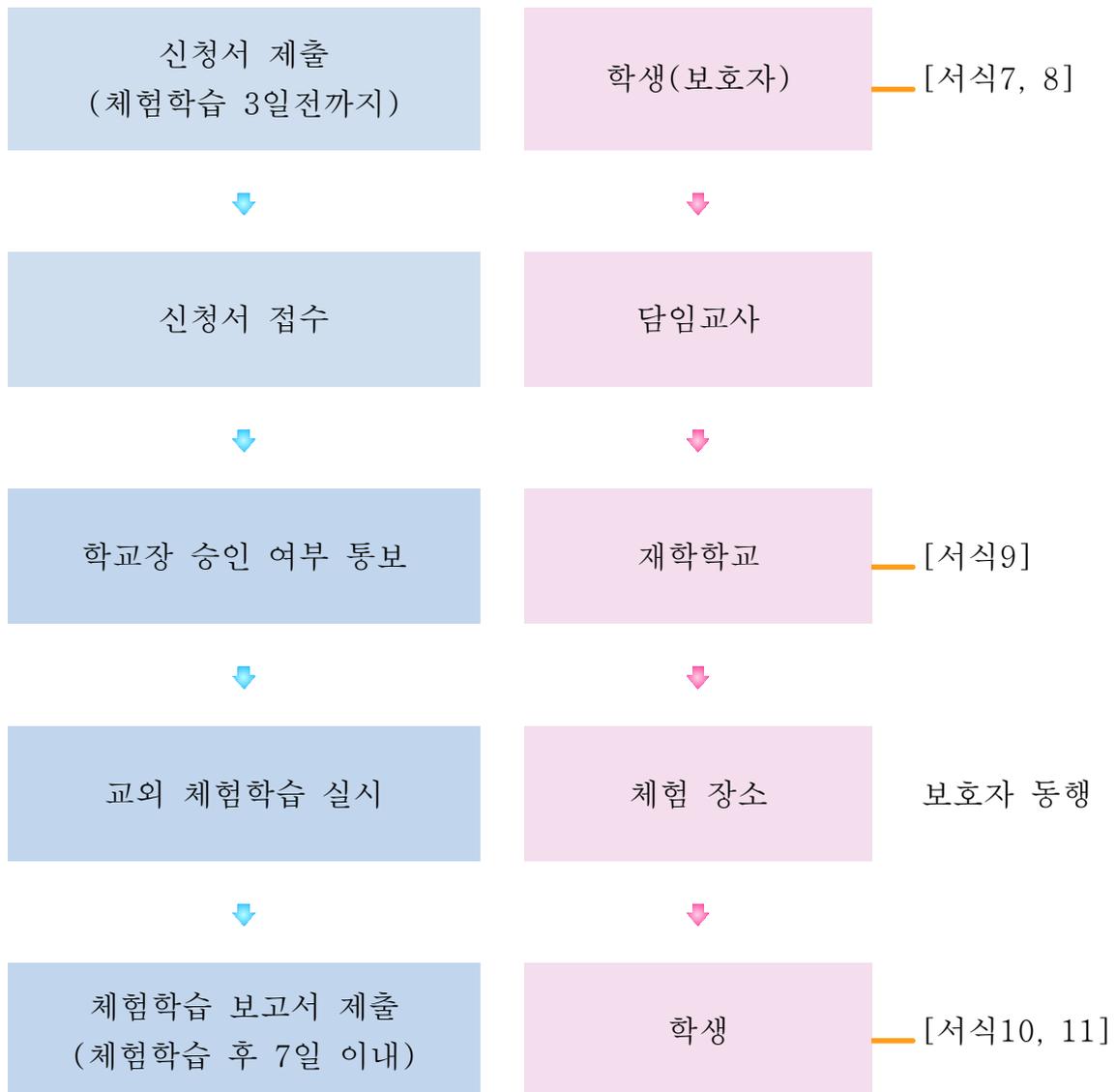
## 2

###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7]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8]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10]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 [서식11]) 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규정에 의해 예외 인정 가능)
-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서식 7> : 학교 제출용(보호자용)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체험학습 참가자	학년	반	번	성명	전화	비고

기간	2022년 월 일(요일) ~ 2022년 월 일(요일)(일간)					
시간	시 분 ~ 시 분 ※반일신청의 경우에만 작성					
장소						
인솔보호자	기간	학생과의 관계	성명	전화		
체험학습 주제	<예시> · 국내·외 친지 방문 및 효도 체험학습 · 국내·외 역사문화 탐방 및 체험학습 등					
학습내용						
확인사항	· 교외체험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학생 : (인)

신청인 보호자 : (인)

( )학교장 귀하

	담임	부장	교감	교장
결재				

## 가정학습 신청서

가정학습 신청자	학년	반	번	성명	전화	비고

기간	2022년 월 일(요일) ~ 2022년 월 일(요일)(일간)
시간	시 분 ~ 시 분 ※반일신청의 경우에만 작성
장소	※ 하교시간까지는 반드시 가정에서 학습(학원 및 독서실 등에서의 학습 금지)
학습 계획	※ 가정학습 기간 동안의 학습계획을 시간대 별로 작성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li> <li>·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가정학습을 추진하거나 정규수업시간 종료 전 외부 활동 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li> <li>· 가정학습 신청서는 가정학습 실시 1일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li> </ul>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학생 : (인)

신청인 보호자 : (인)

( )학교장 귀하

	담임	부장	교감	교장
결재				

<서식 9> : 담임교사가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성명		학년 반	학년 반 번
신청기간	2022년 월 일(요일) ~ 2022년 월 일(요일)(일간)		
허가기간	2022년 월 일(요일) ~ 2022년 월 일(요일)(일간)		
누적사용기간/ 인정기간	일 / 일		
위와 같이 허가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2년 월 일			
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 (인)			
보호자님 귀하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서식 10> : 체험학습 종료 후 학생이 작성하여 제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 누 가

( )학교	제 ( )학년 ( )반 ( )번	이름 :
-------	-------------------	------

▣ 언 제

기 간	2022년 월 일(요일) ~ 2022년 월 일(요일)(일간)
시 간	시 분 ~ 시 분 ※반일신청의 경우에만 작성

▣ 어디에서

교외체험학습 장소	▶
--------------	---

▣ 무엇을, 어떻게, 소감(필요시 사진 등은 뒷면 부착)

무엇을	가정의 가게, 돌아가신 분의 얼, 만난 친척, 추석 민속놀이, 고향의 자료, 추석 상차리기, 기타 국내외 각종 체험
어떻게	구체적인 체험 내용 등을 자유롭게 기록
소 감	교외체험학습을 통해 느낀 점을 자유롭게 기술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학생 : (인)

( )학교장 귀하

결 재	담 임
	전 결

※ 보고서 제출기간: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11> : 체험학습 종료 후 학생이 작성하여 제출

## 가정학습 보고서

▣ 누 가

( )학교	제 ( )학년 ( )반 ( )번	이름 :
-------	-------------------	------

▣ 언 제

기 간	2022년 월 일(요일) ~ 2022년 월 일(요일)(일간)
시 간	시 분 ~ 시 분 ※반일신청의 경우에만 작성

▣ 어디에서

가정학습 장소	▶
---------	---

▣ 학습내용, 학습방법, 학습결과(필요시 사진 등은 뒷면 부착)

학습 결과 보고	※가정학습 신청서의 가정학습 계획에 따른 학습 결과 작성
-------------	---------------------------------

위와 같이 가정학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학생 : (인)

( )학교장 귀하

결 재	담 임
	전 결

※ 보고서 제출기간: 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1. 추진 목적**

- 가.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 제공
- 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설, 운영을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 다.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실현

**2. 추진 방침**

- 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조사하여 반편성에 필요한 적정 인원이 희망할 경우 (5명 이상)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한다.
- 나. 방과후학교 수업 결과 공개는 연 1회(학교 축제와 연계하여 공연 및 작품 전시) 발표한다.
- 다.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및 의견 수렴을 연 2회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한다.
- 라. 운영 방법은 학교군-지역연계형(고산지역) 방과후마을학교 형태로 업체 위탁하여 운영한다.
- 마. 2022 방과후 교육활동 실행 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3. 운영 계획(안)**

- 가. 운영 기간: 2022.4.6.(수) ~ 2022.12.28.(수) 설송제 (연 20주~21주 예정)
- 나. 운영 시간: 매주 수요일 7~8교시 운영 (3시20분-4시50분)
- 다. 부서 당 적정 인원: 5명~15명 이내
- 라.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특기적성 프로그램(락밴드, 댄스, 요리, 일본어, 캘리그래피반 등)을 개설하여 운영
- 마. 프로그램 별 강사는 외부강사로 한다.

**4. 운영 경비 및 지도 경비**

- 가. 운영 경비: 학교 표준교육비 및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비, 지자체 지원비
- 나. 지도 경비: 시간당 32,000원

**5. 학생 관리 및 안전지도**

- 가. 출결관리: 학부모에게 지각, 결석 상황을 안내하고 출석을 독려한다.
- 나. 생활지도: 프로그램 참여태도, 생활태도, 위생 및 건강관리, 시설물 보호 등에 힘쓴다.
- 다. 안전지도: 안전지도 및 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1) 코로나-19 감염 예방교육 방역수칙 안전지도
  - 2) 교내 안전지도 및 안전 귀가지도를 실시한다.

**6. 기대 효과**

- 가.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잠재적 소질 및 적성이 계발되어 특기 신장될 것이다.
- 나.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더불어 공교육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 다. 사교육비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어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될 것이다.
- 라.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농 간의 교육 격차가 완화될 것이다.

### ▣ 2022학년도 1학기 창의적체험활동 누가기록 (1학년)

월	주	일시	자율활동 (목1,3주5,6교시)	봉사활동 (목1,3주5,6교시)	일시	진료(수,3/4교시)	일시	동아리 (목2,4주5,6교시)
3월	1	3.2	*1-5교시(5시간) 1교시(입학식)2교시(담 임),3교시(학폭예방및 학교생활교육), 4교시 (장애인식개선교육), 5 교시(감염병및성폭력예 방교육)	6교시(1시간)		자	3.2	2교시(1시간)
	1	3.3	폭력 및 신변교육(5교시)	6교시(1시간)		유	3.3	
	2	3.10					3.10	5-6교시(2시간)
	3	3.17	자율(5교시)	6교시(1시간)		학	3.17	
4월	4	3.24					3.24	5-6교시(2시간)
	5	3.31	교통안전교육(5교시)	6교시(1시간)		년	3.31	
	6	4.7					4.7	5-6교시(2시간)
	7	4.14	자율(2시간)				4.14	
	8	4.21					4.21	5-6교시(2시간)
5월	9	4.28	1학기 1차고사	1학기1차고사			4.28	1학기 1차고사
	10	5.3	학교스포츠클럽 발표회 자율 (6시간)	학교스포츠클럽 발표회 7교시(1시간)				
	10	5.5	어린이날	어린이날			5.5	어린이날
	11	5.12					5.12	5-6교시(2시간)
	12	5.19	자살예방교육(5교시) 자율(6시간)				5.19	
6월	13	5.26					5.26	5-6교시(2시간)
	14	6.2	성폭력예방교육(5교시) 어울림(6교시)				6.2	
	15	6.9					6.9	5-6교시(2시간)
7월	16	6.16	흡연예방교육(5교시) 어울림(6교시)				6.16	
	17	6.23					6.23	5-6교시(2시간)
	18	6.30	1학기 2차고사	1학기 2차고사			6.30	1학기 2차고사
	19	7.7	흡연예방교육(5교시) 어울림(6교시)				7.7	
	20	7.14					7.14	5-6교시(2시간)
	21	7.21	여름방학식 자율(1시간)			여름방학식	7.21	여름방학식
소계			21시간 (이수시간기준: 12)	5시간 (이수기준:5)	시간 (이수기준:17)		19시간 (이수기준:17)	

## □ 2022학년도 1학기 창의적체험활동 누가기록 (2학년)

월	주	일시	자율활동 (목,1,3주5,6교시)	봉사활동 (목,1,3주5,6교시)	일시	진로(목,5/6교시)	일시	동아리 (목,2,4주5,6교시)
3월	1	3.2	*1-5교시(5시간) 1교시(시업식)2교시(담임), 3교시(장애인식개선교육), 4교시(감염병및성폭력예방교육), 5교시(학폭예방및학교생활교육)	6교시(1시간)	3.2		3.2	2교시(1시간)
	1	3.3	폭력 및 신변교육(5교시)	6교시(1시간)	3.3		3.3	
	2	3.10			3.10		3.10	5-6교시(2시간)
	3	3.17		6교시(1시간)	3.17	5교시(1시간)	3.17	
	4	3.24			3.24		3.24	5-6교시(2시간)
4월	5	3.31		6교시(1시간)	3.31	5교시(1시간)	3.31	
	6	4.7			4.7		4.7	5-6교시(2시간)
	7	4.14			4.14	5-6교시(2시간)	4.14	
	8	4.21			4.21		4.21	5-6교시(2시간)
	9	4.28	1학기 1차고사	1학기1차고사	4.28	1학기 1차고사	4.28	1학기 1차고사
5월	10	5.3	학교스포츠클럽 발표회 자율(6시간)	학교스포츠클럽 발표회(7교시(1시간))				
	10	5.5	어린이날	어린이날	5.5		5.5	어린이날
	11	5.12			5.12		5.12	5-6교시(2시간)
	12	5.19	자살예방교육(5교시)		5.19	6교시(1시간)	5.19	
	13	5.26			5.26		5.26	5-6교시(2시간)
6월	14	6.2	성폭력예방교육(5교시) 어울림(6교시)				6.2	
	15	6.9					6.9	5-6교시(2시간)
	16	6.16	흡연예방교육(5교시) 어울림(6교시)				6.16	
7월	17	6.23					6.23	5-6교시(2시간)
	18	6.30	1학기 2차고사	1학기 2차고사			6.30	1학기 2차고사
	19	7.7	흡연예방교육(5교시) 어울림(6교시)				7.7	
	20	7.14					7.14	5-6교시(2시간)
	21	7.21	여름방학식 자율(1시간)			여름방학식	7.21	여름방학식
			17시간 (이수시간기준: 7)	5시간 (이수기준:5)	5시간 (이수기준:5)		19시간 (이수기준:17)	

▣ 2022학년도 1학기 창의적체험활동 누가기록 (3학년)

월	주	일시	자율활동 (목,1,3주5,6교시)	봉사활동 (목,1,3주5,6교시)	일시	진로(목,5/6교시)	일시	동아리 (목,2,4주5,6교시)
3월	1	3.2	*1-5교시(5시간) 1교시(시업식)2교시(담임), 3교시(감염병 및 성폭력예방교육), 4교시(학폭예방및학교생활교육), 5교시(장애인식개선교육)	6교시(1시간)	3.2		3.2	2교시(1시간)
	1	3.3	폭력 및 신변교육(5교시)	6교시(1시간)	3.3		3.3	
	2	3.10			3.10		3.10	5-6교시(2시간)
	3	3.17		6교시(1시간)	3.17	5교시(1시간)	3.17	
	4	3.24			3.24		3.24	5-6교시(2시간)
4월	5	3.31		6교시(1시간)	3.31	5교시(1시간)	3.31	
	6	4.7			4.7		4.7	5-6교시(2시간)
	7	4.14			4.14	5-6교시(2시간)	4.14	
	8	4.21			4.21		4.21	5-6교시(2시간)
	9	4.28	1학기 1차고사	1학기1차고사	4.28	1학기 1차고사	4.28	1학기 1차고사
5월	10	5.3	학교스포츠클럽 발표회 자율(6시간)	학교스포츠클럽 발표회 7교시(1시간)				
	10	5.5	어린이날	어린이날	5.5		5.5	어린이날
	11	5.12			5.12		5.12	5-6교시(2시간)
	12	5.19	자살예방교육(5교시)		5.19	6교시(1시간)	5.19	
	13	5.26			5.26		5.26	5-6교시(2시간)
6월	14	6.2	성폭력예방교육(5교시) 어울림(6교시)		6.2		6.2	
	15	6.9			6.9		6.9	5-6교시(2시간)
	16	6.16	흡연예방교육(5교시) 어울림(6교시)		6.16		6.16	
	17	6.23			6.23		6.23	5-6교시(2시간)
	18	6.30	1학기 2차고사	1학기 2차고사	6.30		6.30	1학기 2차고사
7월	19	7.7	독서행사(작가와만남)(5,6교시)		7.7		7.7	
	20	7.14			7.14		7.14	5-6교시(2시간)
	21	7.21	여름방학식 자율(1시간)		7.21	여름방학식	7.21	여름방학식
			17시간 (이수시간기준: 9)	5시간 (이수기준:5)	5시간 (이수기준:5)		19시간 (이수기준:17)	

## ▣ 교내상 수상계획

순	수상명	시행(월)	참가대상	수상인원	수상비율 (20%이내)	담당	공개방식
1	표창장(모범 학생부문)	5월	전교생	학급당 2명	14%이내	학생인성 인권안전	학교홈페이지
2	백일장 대회	10월	전교생	학년별 3명씩	10%이내	도서관	학교홈페이지
3	학교장상	2월	3학년	학년 1명	3% 이내	진학	학교홈페이지
4	봉사상	2월	3학년	학급당 1명	3% 이내	진학	학교홈페이지
5	공로상	2월	3학년	학년 6명 이내	20% 이내	진학	학교홈페이지
6	선행상	2월	3학년	학급당 1명	3% 이내	진학	학교홈페이지
7	효행상	2월	3학년	학급당 1명	3% 이내	진학	학교홈페이지
8	3년 개근상	2월	3학년	해당학생		진학	학교홈페이지
9	3년 정근상	2월	3학년	해당학생		진학	학교홈페이지
10	수학 말하기대회	7월/ 12월	전교생	학급당 2명	14% 이내	수학	학교홈페이지
11	꿈성장기록 우수상	12월	1학년	학급당 3명	20%이내	자유학년제	학교홈페이지
12	진로체험 우수상	7월/ 12월	2,3학년	학급당 2명	12% 이내	진로	학교홈페이지

## 9

## 2022학년도 동아리 부서 편성

순	부서명	담당교사	인원	담당교실
1	영화감상	신형교	2-3명	국어2실
2	건강걷기	채윤미	2-3명	우천시 시청각실
3	도서	장유정	2-3명	도서관
4	컬러링북(색칠)	유명희	2-3명	수학1실
5	몸살림(유연성)운동	김경란	2-3명	홈베이스
6	또래상담	강승경	2-3명	상담실
7	탁구	김경자	2-3명	강당
8	방구석 놀이터	박미진	2-3명	수학2실

### 1. 추진 목적

- 가. 프로젝트 수행 방식 동아리 활동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 나. 지역교육자원을 활용한 동아리 활동으로 완주를 사랑하는 공동체 역량 향상
- 다. 학생들의 풍부한 감성과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소질과 적성을 발견해 꿈을 찾을 기회를 제공

### 2. 추진 방침

- 가.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여 동아리 개설 및 활동계획 수립
- 나. 동아리 활동 공유: 완주교육협력지구 홈페이지에 운영계획서, 활동내용(사진) 탑재(5회 이상)
- 다. 동아리 활동 발표: 2022년 10월 예정(공연, 체험부스, 전시 등)
- 라. 자율동아리 활동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년 당 한 개만 입력 가능  
(자율동아리는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기 초에 구성할 수 있으며, 학기 중에 구성된 자율 동아리활동은 입력하지 않음)

### 3. 자율 동아리 구성 및 운영

- 가. 운영 기간: 2022. 4월 ~ 12월
- 나. 동아리 당 적정 인원: 10명 이상
- 다. 동아리 운영을 위한 멘토: 교사, 학부모 등 섭외
- 라. 청소년 자율동아리: 락밴드, 댄스, 요리, 독서토론, 탁구, 배드민턴, 마을탐사동아리, 방구석 놀이터 등 8개 개설 예정
- 마. 활동 지원 예산: 동아리별 50만원 내외(완주교육협력지구 청소년 자율동아리 선정 이후)

### 4. 기대 효과

- 가. 학생 스스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 나.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학교생활에 크게 활력을 제공
- 다. 성취감과 자신감 향상, 서로 협업 소통하며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 의식과 연대 의식 고취
- 라. 지역교육자원을 활용한 동아리 활동으로 애향심 고취

가. 봉사활동 총시간: 중학교 3년간 30시간(1년간 10시간 권장), 고입내신성적 산출 반영

나. 봉사활동 시간

	2019	2020	2022	2022	2023	계
중1권장시수	x	x	10	10	10	30
중2권장시수	x	12	10	8	x	30
중3권장시수	18	12	0	x	x	30

다. 봉사활동 종류

종류		내용		비고
학 교	창체시간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운영되는 봉사활동으로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시수 2/3이상 편성하여 실시하고 인정		1학기6시간 2학기5시간
		학교 내 개인활동	학급활동	교수매체, 절전, 학급쓰레기분리수거, 우유급식 및 핸드폰관리 도우미
	전교활동		도서관, 학교방송, 쓰레기장분리수거도우미	
개인활동		개인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봉사활동(확인서 첨부 인정)		공휴일 1일 최대 8시간 이내

라. 봉사활동 유의사항

-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담임) -> 승인 -> 활동 후 확인서 제출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이용할 경우 자원봉사 포털에서 봉사활동 신청 ->활동 후 나이스로 실적 전송 -> 담임 확인 후 승인 및 기재
- 봉사활동은 전라북도교육청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인정(연계사이트에 있는 기관이나 활동이라도 도교육청의 계획에 벗어나는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봉사활동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 이용)
- 평일 개인 봉사활동의 경우 7교시 수업 있는 날은 1시간 인정, 6교시 수업 있는 날은 2시간까지 인정함.

## 특색사업 : 마을예술학교 운영을 통한 소통과 공감 능력 향상

<p><b>목 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중심의 예술활동을 통한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li> <li>○ 예술을 삶의 관련 속에서 성찰함으로써 소통과 공감 능력을 향상</li> <li>○ 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심미력 향상과 인성교육 함양</li> <li>○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의 장을 마련</li> <li>○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방과후 - 동아리 연계 선순환 구조의 교육과정 체계를 정립</li> </ul>
<p><b>추진방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학교와 지역 특성을 살려 운영</li> <li>○ 지역 학생 외에도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li> <li>○ 다양한 예술 분야의 예술·인성교육을 실시</li> <li>○ 학생의 자율권과 자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적 활동을 위한 환경을 제공</li> <li>○ 자치 동아리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li> <li>○ 학교 수업 - 방과후 - 동아리 연계형 학교 축제로 살아있는 교육 현장 실습의 장을 마련</li> </ul>
<p><b>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즐겁고 신나는 학교생활 정착</li> <li>○ 학생 중심의 활동 전개로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li> <li>○ 지역 중심의 예술활동을 통한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li> <li>○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한 여가 선용 생활 습관 정착</li> <li>○ 예술을 삶의 관련 속에서 성찰함으로써 소통과 공감 능력을 향상</li> <li>○ 예술교육활성화를 통한 심미력 향상과 인성교육 함양</li> </ul>

## 1. 목적

- 완주교육협력지구의 핵심과제로 모든 학교의 변화와 성장 지원
- 지역과 학생, 학부모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학생중심수업 전개
- 구성원의 참여와 협의를 통한 민주적 학교자치 운영 시스템 구현
- 모든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인권존중의 학교 문화 구축

## 2. 추진단계

단계	내용	질문
1단계	'따뜻한 학교'에 대한 개념 세우기	따뜻한 학교란?
2단계	우리학교의 상황 진단하기	우리학교가 처한 어려움은?
3단계	'따뜻한 학교' 내용 만들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4단계	'따뜻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5단계	결과 및 실천 과정 돌아보기	진행 과정 상 문제점은?

## 3. 운영과제: 공통과제와 선택과제로 구분하여 운영

## 가. 공통과제

- 학교별 여건과 요구를 반영하여 구성원이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실천 가능한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

과제	내용
① 존중과 신뢰의 학교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뜻한 아침 맞이하기와 아침시간 학생에게 집중하기</li> <li>· 학교공동체 약속 정하기 실천하기(학교생활협약)</li> <li>· 소통과 참여를 통한 교무회의, 학생회의 문화 바꾸기</li> </ul>
② 학생 배움중심 수업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과(주제)통합 학습(연 2회 이상)</li> <li>· 즐거운 배움과 협력이 넘치는 학생 배움중심 수업혁신</li> <li>·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중심 평가 혁신</li> </ul>
③ 모두가 성장하는 교사 학습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학년, 교과) 학습 공동체 조직 운영</li> <li>· 학생 자치 및 자율 동아리 운영</li> <li>· '배움과 성장의 날' 운영-매주 수요일 오후 2시간</li> </ul>
④ 특색 있는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학교 비전 세우기</li> <li>· 학교 비교육적 관행 없애고 수업중심 시스템 만들기</li> <li>·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마을교육과정 운영</li> </ul>

## 나. 선택과제

-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학교 특색이 반영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위한 지속 실천 가능한 과제
- 선택과제는 학교별 상황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함.

## 다. 기대효과

- 학생 배움 중심, 삶 중심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학교 실현

### 1. 목적

- 가. 기초학습 부진학생의 조기 진단과 지도를 통한 기초학습 결손 방지 및 예방
- 나.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으로 기초학력 더딤 학생 최소화과 기초학력 향상
- 다. 정상적인 교수-학습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한 명의 낙오자도 생기지 않도록 하여 행복한 교육 실현

### 2. 기본 방향

- 가. 기초학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초학력 부진학생의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 나. 대상 학생 선정 및 지도 방안 등 구체적인 방법은 기초학력 협의체를 통하여 결정한다.
- 다. 2022학년도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활용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 라. 상담활동을 통하여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가 학습 결손요인을 찾아내어 심리치료 인성 지도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 3. 세부 추진 계획

- 가. 기초학력 협의체 구성
  - 구성: 교장, 교감, 교무부장, 연구부장, 국어, 영어, 수학교과 부장 중심으로 구성
  - 역할: 학생 진단, 선정, 맞춤형 학습 지원 및 관리,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방법(과목 선정, 일정) 및 기초학력 향상 지도방안(프로그램) 논의, 내·외부강사 선정 지원 등
  - 3월 중 기초학력 협의체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 결정
- 나. 방법: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www.plasedu.org](http://www.plasedu.org)) 진단검사지 활용  
 전 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한 후, 기초학력 미달 및 부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습지원(학습동기와 자존감, 관계성 회복 프로그램 및 학습 수준과 학습 더딤 요인별 소수(1:1 또는 5인 이내)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
- 다. 운영 기간: 2022.4월~12월, 연간 총 18차시 예정
- 라. 운영 시간: 매주 목요일 7교시(15:20~16:05)
- 마. 운영 프로그램: 학년별 국어, 영어, 수학 교과 관련 기초 학습반 6개 반 개설 예정, 학기별 관계성 회복 사제동행 프로그램 운영 등
- 바. 예산 운영 계획: 총 5,200,000원  
 ※ 기초학력 학교 예산(120만원)과 기초학력 맞춤형 지원학교 지원금(400만원)을 합한 520만원을 기준으로 진행

### 4. 기대 효과

- 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의 학습의욕 및 흥미도 고취
- 나. 학교에서 소외될 수 있는 기초학력 부진학생의 사기 진작
- 다.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신뢰도 상승

### 1. 목적

- 수업과 평가의 긴밀한 연계로, 평가 결과를 수업에 반영하고 수업의 질을 높임
- 다양한 평가 기법을 적용하고, 공정한 평가와 신뢰성 확보
- 다양한 영역의 수행평가를 통하여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계발

### 2. 방침

- 학업성적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
-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나누어 실시
- 모든 교과는 각 교과별 특성에 맞는 영역별 평가 기준안을 작성하여 기준에 근거한 평가 실시

### 3. 세부 추진 계획

가. 학기별 교내 정기고사 평가 일정과 실시 교과

구분	고사	세부계획	실시일	구분	고사	세부계획	실시일
1 학기	1차 고사	실시 공고	04.12(화)	2 학기	1차 고사	실시 공고	9.19(월)
		고사원안 및 문항정보표 제출	4.18(월)			고사원안	9.26(월)
		고사 실시	04.26.(화)~04.28(목)			고사 실시	10.5(수)~10.7(금)
		성적 처리 및 이의 신청	04.29(금)~05.10(화)			성적 처리 및 이의 신청	10.7(금)~10.18(화)
		가정통신발송	5.12(목)			가정통신발송	10.20(목)
	2차 고사	실시 공고	6.15(수)	2차 고사	실시 공고	11.16(수)	
		고사원안	6.22(수)		고사원안	11.22(화)	
		고사 실시	6.30(목)~7.4(월)		고사 실시	11.30(수)~12.2(금)	
		성적 처리 및 이의 신청	7.4(월)~7.12(화)		성적 처리 및 이의 신청	12.5(월)~12.13(화)	
		가정통신발송	7.14(목)		가정통신발송	12.15(목)	

학기	고사	1 학 년	2 학 년	3 학 년
1 학 기	1차	(자유학년제)	국어, 역사, 수학, 과학, 영어, 기술·가정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역사, 기술·가정, 영어
	2차	(자유학년제)	국어, 역사, 수학, 과학, 영어, 기술·가정, 도덕, 정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역사, 기술·가정, 영어, 도덕
2 학 기	1차	(자유학년제)	국어, 역사, 수학, 과학, 영어, 기술·가정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역사, 기술·가정, 영어, 도덕
	2차	(자유학년제)	국어, 역사, 수학, 과학, 영어, 기술·가정, 도덕, 정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역사, 기술·가정, 영어, 도덕
수행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평가는 과제 제출형 방식은 금지하고, 학생 중심 수업에 맞는 과정중심형 수업밀착 평가를 실시하며,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함.</li> <li>- 학기말 성적에 반영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함.</li> </ul> (단, 3학년 2학기 수행평가는 후기고 내신성적산출일 이전까지 마감.)		

나. 영어듣기평가 일정

학기	학년	실 시 일	학기	학년	실 시 일
1	1	4월 5일(화)	2	1	9월 6일(화)
	2	4월 6일(수)		2	9월 7일(수)
	3	4월 7일(목)		3	9월 8일(목)

4. 2022학년 1학기 과목별 평가영역 및 반영 비율과 수행평가 영역별 평가기준

◎과목별 평가영역 비율 (100% = 지필평가 반영비율+수행평가 반영비율)

**\*과목별 수행평가의 기본점수는 평가영역만점의 10~40%를 권장함.**

🇰🇷 국어과

과목명	국어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이해활동	표현활동	독서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10점	20점	10점
반영비율	21%이하	9%이상	21%이하	9%이상	10%	20%	10%
기본점수	0점		0점		4점	8점	4점

도덕과

1) 1학년

과 목 명		도 덕
평가방법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자유학년제(지필평가 미 실시)
영역만점		
반영비율		
기본점수		
평가시기	1학기	자유학년제 과정중심평가로 별도계획안에 따름
	2학기	자유학년제 과정중심평가로 별도계획안에 따름
성취기준	1학기	[9도01-01 ~ 9도01-02]
	2학기	[9도01-03 ~ 9도01-05]

2) 2학년, 3학년

과 목 명		도 덕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1차고사(0%)		2차고사(30%)		가치이해	가치탐구	가치적용
		선택형	서답(서술)형	선택형	서답(서술)형			
영역만점		-	-	70점	30점(10)점	30점	20점	20점
반영비율		-	-	21%	9%	30%	20%	30%
기본점수		-		0점		12점	8점	8점
평가시기	1학기	-		6, 7월 중		학기 중 수시		
	2학기			12월 중		학기 중 수시		
2학년 성취기준	1학기	[9도02-01 ~ 9도02-04], [9도03-01]						
	2학기	[9도03-01 ~ 9도03-03], [9도02-05 ~ 9도02-06]						

3학년 성취기준	1학기	[9도02-07] [9도03-04 ~ 9도03-07]
	2학기	[9도04-01 ~ 9도04-04]

☉ 사회(역사)과

과 목 명		사회(역사)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배움평가 (주제탐구, 역사신문 등)	역량평가 (마인드맵, 포트폴리오)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30점 (20점)	70점	30점 (20점)	20점	20점	
반영비율	21%	9%	21%	9%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8점
평가시기	1학기	4월 중		7월 중		수시평가	

☉ 수학과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배움평가(20%)	역량평가(20%)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20점	20점	
반영비율	21%이하	9%이상	21%이하	9%이상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8점

☉ 과학과

<1학기>

과 목 명		과학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50%				50%		
평가영역	1차고사(25%)		2차고사(25%)		자유탐구	수업밀착형 평가	과학예술 융합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30점 (20점)	70점	30점 (20점)	20점	20점	10점	
반영비율	17.5%	7.5% (5%)	17.5%	7.5% (5%)	20%	20%	1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8점	4점

<2학기>

과 목 명	과학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50%				50%		
평가영역	1차고사(25%)		2차고사(25%)		자유탐구	수업밀착형 평가	과학예술 융합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30점 (20점)	70점	30점 (20점)	20점	20점	10점
반영비율	17.5%	7.5% (5%)	17.5%	7.5% (5%)	20%	20%	1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8점	4점

🎯 기술·가정과

1) 1학년 자유학기제

가) 지도 단위

학 기	단원명	교과역량	핵심 성취 기준	교수·학 습방법	평가 방법
1 학 기	I. 청소년의 이해	·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 · 생활자립능력 · 관계형성능력	[9기가01-01]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청소년기의 발달 특징과 자신의 발달 특징을 연결 지어 이해한다. [9기가01-02] 청소년기 또래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여 건강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9기가01-03] 청소년의 성적 발달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성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한다.	개인 및 모둠활 동	· 자기평가 · 동료평가 · 교사평가
2 학 기	IV. 기술의 발달과 생활	· 기술적 문제해결 능력 · 기술활용능력	[9기가05-01]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 가정, 직업의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 기술 활용 및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한다. [9기가05-02] 가정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안전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예방 및 대처 방안에 대하여 이해한다.	개인 및 모둠활 동	· 자기평가 · 동료평가 · 교사평가
	II. 청소년의 생활과 안전	·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 · 생활자립능력 · 관계형성능력	[9기가02-01] 청소년기 영양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청소년기 식생활 문제를 인식하여 자신의 식행동을 평가한다.	개인 및 모둠활 동	· 자기평가 · 동료평가 · 교사평가

## 나) 평가 계획

학기	평가 종류	수행평가		
		1차	2차	3차
1학기	횟수/영역	긍정적 자아정체감 형성 활동	건강한 성가치관 형성 활동	건강한 친구관계 형성 활동
		1단원		
	평가 시기	4월	5월	6~7월
	평가내용 (성취기준)	[9기가01-01]	[9기가01-03]	[9기가01-02]
	2학기	횟수/영역	미래 기술과 직업 동향	안전 픽토그램 제작
4단원			2단원	
평가 시기		8월	9~10월	11~12월
평가내용 (성취기준)		[9기가05-01]	[9기가05-02]	[9기가02-01]

### 2) 2학년 1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2차고사(30%)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	프로젝트 3	프로젝트 4
	선택형	서답형	식습관	옷차림	생활문제	의복 재활용
영역만점	70~80점	20~30점	20점	20점	20점	10점
반영비율	21%~24%	6%~9%	20%	20%	20%	10%
기본점수	0점		8점	8점	8점	4점
평가시기	1학기	7월	4~7월			

### 3) 2학년 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2차고사(30%)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	프로젝트 3	프로젝트 4
	선택형	서답형	소비생활	기술적 문제해결	제조기술	건설기술
영역만점	70~80점	20~30점	20점	20점	20점	10점
반영비율	21%~24%	6%~9%	20%	20%	20%	10%
기본점수	0점		8점	8점	8점	4점
평가시기	2학기	12월	8~12월			

4) 3학년 1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2차고사(30%)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	프로젝트 3	프로젝트 4
	선택형	서답형	건강 가정	건강 식사	가정과 안전	일가정양립
영역만점	70~80점	20~30점	20점	20점	20점	10점
반영비율	21%~24%	6%~9%	20%	20%	20%	10%
기본점수	0점		8점	8점	8점	4점
평가시기	1학기	7월	4~7월			

5) 3학년 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1차고사(30%)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	프로젝트 3	프로젝트 4
	선택형	서답형	진로탐색	정보통신윤리	수송기술	생명기술
영역만점	70~80점	20~30점	20점	10점	20점	20점
반영비율	21%~24%	6%~9%	20%	10%	20%	20%
기본점수	0점		8점	4점	8점	8점
평가시기	2학기	10월	8~12월			

☉ 체육과

구분		수행평가(100%)						계	
		심동적 영역				정의적 영역 (10%)	연구 보고서 (20%)		
평가 영역		기능 (70%)							
1학년	1학기	자유학년제							
	2학기								
2학년	1학기	영역	건강 (PAPS)	도전 (왕복오래달리기)	경쟁 (배구)	표현 (자이브)	정의적 영역	연구 보고서	100
		영역만점	10	20	20	20	10	20	
		반영비율	10%	20%	20%	20%	10%	20%	
		기본점수	4	8	8	8	4	8	
	2학기	영역	건강 (출넘기)	경쟁 (농구)	경쟁 (배드민턴)	표현 (라인댄스)	정의적 영역	연구 보고서	100
		영역만점	10	20	20	20	10	20	
		반영비율	10%	20%	20%	20%	10%	20%	
		기본점수	4	8	8	8	4	8	
3학년	1학기	영역	건강 (PAPS)	도전 (50M 달리기)	경쟁 (농구)	표현 (차차차)	정의적 영역	연구 보고서	100
		영역만점	10	20	20	20	10	20	
		반영비율	10%	20%	20%	20%	10%	20%	
		기본점수	4	8	8	8	4	8	
	2학기	영역	건강 (출넘기)	도전 (제자리멀리뛰기)	경쟁 (배드민턴)	표현 (라인댄스)	정의적 영역	연구 보고서	100
		영역만점	10	20	20	20	10	20	
		반영비율	10%	20%	20%	20%	10%	20%	
		기본점수	4	8	8	8	4	8	

구분		수행평가(100%)						계	
		심동적 영역				정의적 영역 (10%)	연구 보고서 (20%)		
평가 영역		기능 (70%)							
1학년	1학기	자유학년제							
	2학기								
2학년	1학기	영역	건강 (PAPS)	도전 (왕복오래달리기)	경쟁 (배구)	표현 (자이브)	정의적 영역	연구 보고서	100
		영역	10	20	20	20	10	20	

3학년	2학기	만점								
		반영율	10%	20%	20%	20%	10%	20%		
		기본수	4	8	8	8	4	8		
		영역	건강 (줄넘기)	경쟁 (농구)	경쟁 (배드민턴)	표현 (라인댄스)	정의적 영역	연구 보고서	100	
		영역 만점	10	20	20	20	10	20		
		반영율	10%	20%	20%	20%	10%	20%		
	기본수	4	8	8	8	4	8			
	1학기	영역	건강 (PAPS)	도전 (50M 달리기)	경쟁 (농구)	표현 (차차차)	정의적 영역	연구 보고서		100
		영역 만점	10	20	20	20	10	20		
		반영율	10%	20%	20%	20%	10%	20%		
		기본수	4	8	8	8	4	8		
		2학기	영역	건강 (줄넘기)	도전 (제자리멀리뛰기)	경쟁 (배드민턴)	표현 (라인댄스)	정의적 영역	연구 보고서	
영역 만점			10	20	20	20	10	20		
반영율	10%		20%	20%	20%	10%	20%			
기본수	4		8	8	8	4	8			

## ☎ 음악과(2, 3학년)

### 가. 2022학년도 1학기 수행평가 계획 및 세부 기준안

학년	학기	평가 영역	관련 성취 기준	평가 세부 내용	평가 방법	평가 시기	배점	
2·3학년	1학기	표현	표현 (가창)	9음01-01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여 개성 있게 노래한다.	제재곡 1곡 노래하기	수시 실시	30점
			표현 (창작)	9음01-03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간단한 음악작품을 만든다.	음악작품 만들기		30점
		감상	9음02-02	다양한 연주형태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구별하여 설명한다.	서술형 및 논술형 평가 (실음듣기 평가)	20점		
		생활화	9음03-01	음악관련에 참여하고 평한다.	포트폴리오 제출 및 발표	20점		

나. 2022학년도 2학기 수행평가 계획 및 세부 기준안

학년	학기	평가 영역	관련 성취 기준	평가 세부 내용	평가 방법	평가 시기	배점	
2·3 학년	2 학기	표현	표현 (가창)	9음01-01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여 개성 있게 노래한다.	제재곡 1곡 노래하기	수시 실시	30점
			표현 (기악)	9음01-05	바른 자세와 연주법으로 연주한다.	제재곡 1곡 연주하기		30점
		감상	9음02-02	다양한 연주형태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구별하여 설명한다.	서술형 및 논술형 평가 (실음듣기 평가)	20점		
		생활화	9음03-01	음악관련 행사에 참여하고 평한다.	포트폴리오 제출 및 발표	20점		

🎨 미술과

학년	1학년( 1학기 )			
자유학년제 적용	자유학년제 실시에 따라 평가를 점수화하지 않고,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학생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 에 서술식으로 입력한다.			
평가방법	수 행(1, 2, 3학년 )			
평가비율	100%			
평가영역	표현1	표현2	체험	감상
만점	30점	30점	20점	20점
기본점수	12	12	8	8
반영비율	30%	30%	20%	20%
평가시기	수시	수시	수시	수시

🌐 외국어(영어)

과 목 명	영어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듣기	말하기	쓰기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30점 이상 (서술형은 20점)	70점	30점 이상 (서술형은 20점)	2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	9%	21%	9%	2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4점	4점

한문과

1학년 (자유학년제) <1학기>

가) 1학년 (자유학년제)

<1학기>

평가영역	평가내용	평가방법	시기
한자와 한자문화	한자의 원리 설명하기	수행평가(30점)	3~4월
	어휘 활용하기	수행평가(30점)	5~6월
포트폴리오	수업 활동지 작성 및 학습 참여 활동	수행평가(40점)	3~7월
계		100점	

<2학기>

평가영역	평가내용	평가방법	시기
한자와 한자문화	고사성어 발표하기	수행평가(30점)	8월~9월
	호짓기	수행평가(30점)	10월~11월
포트폴리오	수업활동지 작성 및 학습 참여 활동	수행평가(40점)	8월~11월
계		100점	

정보(2학년)

가. 학기별 평가계획 및 반영 비율

1) 1학기

과목명	정 보				
평가방법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정보사회	정보윤리	자료와정보	정보의 구조화	역량평가
영역만점	20점	20점	20점	30점	10점
반영비율	20%	20%	20%	30%	10%
기본점수	8점	8점	8점	12점	2점
평가지기	3월	4월	5~6월	6~7월	상시

## 2) 2학기

과목명	정 보			
평가방법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문제해결활동	프로그래밍1	프로그래밍2	포트폴리오
영역만점	20점	30점	30점	20점
반영비율	20%	30%	30%	20%
기본점수	8점	12점	12점	8점
평가시기	상시(과정 중심 평가)			

## 🌐 생활중국어

### 1) 1학기 수행평가 계획

평가종류	1학기 수행평가				
평가내용	중국 지도 완성하기	젠말놀이	중국어 이름 디자인하기	한국과 중국의 학교 문화 비교하기	마인드맵 작성하기
평가단원	중국어의 발음	중국어의 발음	2단원	3단원	1~3단원
평가시기	학기 중	학기 중	학기 중	학기 중	학기 중
성취기준	[9생중-05-01]	[9생중-03-01]	[9생중-04-02]	[9생중-05-03]	[9생중-04-03]

### 2) 2학기 수행평가 계획

평가종류	2학기 수행평가				
평가내용	중국인이 좋아하는 숫자, 싫어하는 숫자 조사하기	전지 공예, 홍등 만들기	본문 암기하기	중국 명언 쓰기	마인드맵 작성하기
평가단원	3단원	4단원	3, 4단원	5단원	4, 5단원
평가시기	학기 중	학기 중	학기 중	학기 중	학기 중
성취기준	[9생중-05-01]	[9생중-05-02]	[9생중-02-02]	[9생중-04-02]	[9생중-04-03]

## ○ 목적

성장기 학생에 대한 정기 건강검사를 실시하여 질병 또는 건강상 결함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지도, 건강 상담 등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도모한다.

## ○ 추진 개요

구 분		대 상	실시시기
신체발달상황 검사		2,3학년	4~5월중
건강검진		1학년	4월중
건강조사		2,3학년	3월
별도검사	소변검사	2,3학년	5월중

가. 가정으로 안내문 발송

나. 검사 전 주의사항 및 문진표 작성요령 등 사전교육 실시

다. 1학년 건강검사 대상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부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검사 실시

라. 2, 3학년 별도검사는 학교를 방문하여 검사 실시

## 1. 회원가입/로그인/학교정보 입력



## ③ 학교정보 입력 팝업

<p>*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학생 <input type="radio"/> 교사 <b>교사 입력</b></p> <p>*학교 ※ "학교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해 주세요. <b>학교 찾기</b></p> <p>*학년 <input type="text" value="중학교"/> <input type="text" value="1학년"/></p> <p>*반 <input type="text" value="반명을 입력해주세요."/> 반</p> <p>*번호 <input type="text" value="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번호</p> <p>*알림 수신 <input type="checkbox"/> 온라인클래스 알림 수신 설정          ※ 알림을 OFF 시 학생 관련 알림이 수신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클래스의 학습 알림은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수신됩니다.  <input type="checkbox"/> 선생님 피드백, 독려 등 학습 SMS 수신 동의</p>	<p>구분: 학생</p> <p>학교: 학교 찾기(완주고산중학교)</p> <p>학년: 중학교 각 학년 선택</p> <p>번호: 학급 번호 입력</p>
--	--

## 2. 클래스 가입

① 우리학교 홈	② 클래스 가입하기
----------	------------



### 3. 원격수업 운영 안내

가. 우리학교 공통 플랫폼: EBS온라인클래스(교과별 다른 플랫폼 사용 시 별도 안내)

나. 원격수업 형태 및 운영기준

원격수업 형태	콘텐츠활용, 화상수업, 과제수행 중심 수업
원격수업 운영기준	콘텐츠 시청, 화상수업, 보고서 작성 등 학생의 활동 시간 및 교사의 피드백 시간 등을 포함하여 단위수업 시간(45분)에 준하여 운영

다. 수업내용 및 평가방법

수업내용	교과별 성취기준 및 핵심 개념(내용) 중심
평가방법	① 1학년: 자유학년제 운영 2, 3학년: 1, 2차고사에 출제 가능 ② 교사가 직접 확인·관찰 가능한 학생의 수행과정이나 결과를 수행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③ 온라인 개학기간의 출결은 추후 고교 입시 내신성적에 반영됨

라. 출결처리

- 일 단위로 출석 또는 결석으로 처리함.
- **출석 인정 기준: 해당일 교과별 진도율 60% 이상(로그인, 실시간, 과제제출, 조종례)**
  - 정해진 시작 및 종료 시간은 없지만 당일 해당 과목을 이수해야 함
  -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일 이수하지 못한 경우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돌아오는 일요일까지 수강하면 출석 인정

마. 수업참여 자세

수업 전	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정합니다. ② 수업은 정해진 시간에 수강합니다. ③ 출석 수업과 마찬가지로 수업준비를 미리 합니다.
수업 중	① 바른 자세로 수강합니다. ② 교과별 수업 내용과 자료를 보관하여 추후 평가 및 자기주도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업 후	① 온라인 예절을 지킵니다.(바른 언어, 타인존중) ② 저작권법(제25조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수업 공간에서만 이용가능 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2022년 학교급식운영 안내

1. 학교급식법령의 영양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된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하며 사용하는 **식재료의 원산지**와 함께 **식단표 및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 철저한 식품검수 및 위생관리시스템으로 위생적이고 믿을 수 있는 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천연조미료와 전통음식을 적극반영하며 계절식품을 제공하려고 노력 합니다.
4. 쌀 : 2021년도 수확한 친환경쌀 및 친환경 잡곡류 사용
  - 소고기 : 육질등급 1등급이상 한우 사용
  - 돼지고기 : 육질등급이 1등급이상 국내산
  - 닭, 오리고기 : 품질등급 1등급이상(무 항생제)
  - 달걀 : 품질등급 1등급이상(무 항생제)
  - 수산물 : HACCP시스템이 적용된 식품 사용
  - 조미료 : 무, 다시마, 양파 ,멸치, 새우등을 이용한 천연조미료
  - 김치류 : 국내산
  - 친환경식재료 일부사용 (채소, 과일) - 예산범위
5. 식재료 구매방법 : 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매월 수의견적(공공급식센터)

▶ 우리학교 식단은 학교급식법 영양섭취기준에 맞도록 작성 합니다.

구분	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 A (R.E.)	비타민 B <sub>1</sub> (mg)	비타민 B <sub>2</sub> (mg)	비타민C (mg)	칼슘(mg)	철(mg)	나트륨 (mg)
			권장 필요량	권장 필요량	권장 필요량	권장 필요량	권장 필요량	권장 필요량	권장 필요량
본교 영양 기준량	747	19	233.81	0.38	0.44	30.65	303.66	4.9	1,056
준수범위 - 에너지(±)10%,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55~70%:7~20%:15~30%									
1. 가공식품과 튀김음식은 주2회 이하로 제공하고, 식재료는 가급적 국내산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단가가 맞지 않을 경우 수입산을 사용합니다. 2.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HACCP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본교 2022년 급식비 비율

구분	비교	학생	
		급식비	비율
식품비		3,264원	88.2%
운영비		436원	11.8%
급식비		3,700원	100%

- \*운영비 잔액발생시 식품비로 사용가능
- \*친환경 쌀 , 친환경농산물 319원 지원 로컬푸드 120원 지원
- \*교직원급식비 : 4,150원

▶ 사이버'영양상담실' 운영

요즘 학부모님께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아이들의 영양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자 본교에서는 **사이버'영양상담실'**을 운영합니다. 비만, 알레르기 반응하는 아토피 등 영양 문제를 가진 학생 중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식습관 및 영양 상태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오니 홈페이지에 문의하여 주세요.

▷사이버영양상담실 : 고산중학교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학교급식⇒ 급식게시판⇒ 영양상담실

▶ '빈그릇운동'- 가정에서도 함께!  
"나는 음식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깨끗한 지구환경과 소중한 음식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교내에서 '빈그릇 운동(수다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기지 않는 식사습관을 지도해주세요.

▶ 학교급식 당, 나트륨 줄이기 추진

과잉 섭취되면 만성질환의 유발요인이 되는 나트륨을 감소시키기 위해 염도계를 사용하여 국 농도를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염도 0.6-0.7%)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학교급식 예절 함께 노력해 봅시다.

- ▶ 식사 전 깨끗이 손 씻기
- ▶ 감사하는 마음 갖기
- ▶ 음식의 가짓수만큼 담도록 노력하기
- ▶ 담은 음식은 골고루 먹어보기
- ▶ 남은 음식은 국그릇에 모아서 버리기

●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1. 2022학년도 학생 구매 대상

- 2022학년도 신입생 (32명)

### 2. 구매품목

- 고산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 하복)

### 3. 교복 업체 선정 방법 및 상한금액

- 학교주관구매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업체 선정 및 계약 방법 결정
- 교복 업체 선정 및 계약 방법 : 수의계약 결정(런던 베이직)
- 공동구매 교복 내역

구분	동복					하복		합계
	후드 집업	셔츠/ 블라우스 (2EA)	맨투맨 티셔츠	바지/ 치마	넥타이	상의 (2EA)	바지/스커트	
금액	50,000	68,000	29,000	41,000	3,000	68,000	41,000	300,000

\* 하복 하의 중 반바지를 원하는 학생은 유료로 개별 구매 가능하며 가격은 41,000원입니다.

### 5. 신입생 대상 희망 조사

- 2022학년도 고산중학교 진학 예정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학교주관 교복구매제도」 홍보 및 사전 수요 조사 실시
- 안내 방법: 가정통신문 및 학교 홈페이지 게시
- 신입생 교복구입 진행: 2022년 2~6월(교복색상디자인변경 추진계획에 의거 진행)

### 6. 최종수량 확정 및 교복 치수 측정

- 학교주관 구매 참여 여부를 확정하여, 교복 물려 입기 등 수요를 제외한 학교주관 구매 참여 규모를 확정(재학생도 희망 시 참여 가능)
- 개인별 교복 신청서 제출 후 교복 치수 측정

### 7. 교복 착용 시기

- 계절별 교복 착용 시기 : 교복(하복, 동복)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교복 외 의류 착용 : 교복 외에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 형태 등에 대해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 8. 사후평가

-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A/S)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확인

1. 외교·국제고·자사고 지원자 : **평준화 일반고 동시지원 가능**
2. 전형일정 : **전기고 특별전형/일반전형 분리 실시**

순	구분	내 용	2022학년도 고입 일정
1	전기고(마이스터고)	원서접수	2022.10.17.(월) - 10.20.(목) 17:00
2	전기고(특별전형)	원서접수	2022.11.9.(수) - 11.10.(목) 17:00
3	전기고(일반전형)	원서접수	2022.11.22.(화) - 11.24.(목) 17:00
4	후기고(외고, 자사고)	원서접수	상산고 2022.12.9.(금) - 12.13.(화)
			전북외고 2022.12.19.(월) - 12.21.(수)
5	후기고(공통)	원서접수	2022.12.26.(월) - 12.28.(수)
6	추가모집	원서접수	2023.2.2.(목) - 2.3.(금) 17:00
7	수시추가모집	입학 시기	2023.2.20.(월) - 2022.5.26.(금)

### 3. 내신성적산출 기준일/완료일

구분	내신성적산출 기준일	내신성적산출 완료일	지필고사
마이스터고	2022.9.30.(금)	2022.10.11.(화)까지	3학년 1학기까지
전기고	2022.10.31.(월)	2022.11.4.(금)까지	3학년 2학기 1차 지필고사까지
후기고	2022.12.16.(금)	2022.12.21.(수)까지	3학년 2학기 지필고사(1,2차)+수행평가

※ 전기고(마이스터고 제외) 내신성적산출: 3학년 2학기 1차 고사(수행평가 제외)까지 반영

※ 3월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다음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음.

### 1. 2023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표

구분	전기고			후기고	
	특수목적고(4교) (산업수요 맞춤형고) [4교]	특수목적고(3교) 특성화고(전문24교, 대안4교) 일반고(전문4교, 예체4교) [39교]	특수목적고(1교) 자율형 사립고(1교) [2교]	비평준화 일반고 [54교]	평준화 일반고 [38교]
전형일정					
내신산출기준일	'22.9.30.(금)	'22.10.31.(월)		'22.12.16.(금)	
내신산출완료일	'22.10.11.(화)	'22.11.7.(월)		'22.12.20.(화)	
원서교부·접수	'22.10.17.(월)-10.20.(목) 17:00까지	'22.11.9.(수)- 11.10.(목) 17:00까지		'22.11.22.(화)- 11.24.(목) 17:00까지	상산고: 2022.12.9.(금)-12.13.(화) 외국어고: 2022.12.19.(월)-12.21.(수) 일반고: 2022.12.26.(월)-12.28.(수)
전형기간 (전형일)	'22.10.26.(수)-10.28.(금)	'22.11.11.(금)	특별전형 (전계열)	'22.11.25.(금)- 11.29.(화)	자기주도학습 전형일 '22.12.9.(금)~'23.1.2 (월)
합격자 발표	'22.11.2.(수) 10:00	'22.11.14.(월) 10:00	일반전형	'22.11.30.(수) 10:00	'23.1.2.(월) 10:00
합격자 발표					'23.1.6.(금) 10:00
학교배정발표					평준화일반고 배정 '23.1.13.(금) 14:00
등록기간	2023.1.16.(월)-1.19.(목) 17:00까지 [전·후기고 공통 정시모집 등록기간]				
추가 모집	원서접수	2023.2.2.(목) - 2.3.(금) 17:00			
	전형일	2023.2.6.(월) - 2.7.(화)			
	합격자발표	2023.2.8.(수) 10:00			
	등록기간	2023.2.13.(월) - 2023.2.14.(화) 17:00			
수시 추가	원서접수	2023.2.20.(월) - 2023.5.26.(금)			
	전형 및 등록기간	수시 추가모집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은 기간 내 수시 (다만, 입학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특기사항	* 전북과학고의 전형은 8월부터 / * 평준화 일반고 추가모집, 수시추가모집 없음				
전형군별 학교명단	<b>특수목적고(4)</b> (산업수요 맞춤형고) -군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한국경마축산고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b>특수목적고(3)</b> 전북과학고, 전북체육고, 전주예술고  <b>특성화고(28)</b> -전문계열(24교) 전주생명과학고, 전주공고, 전주상업정보고, 완산 여고, 군산상고, 군산여상고, 이리공고, 진경여고, 정 읍제일고, 칠보고, 학산고, 남원용성고, 남원제일고, 덕암정보고, 전북하이텍고, 한국계엄과학고, 한국 한방고, 진안공고, 전북유니텍고, 오수고, 한국치 즈과학고, 강호광공고, 부안제일고, 줄포자동차공 고 -대안계열(4) 고산고, 세인고, 푸른꿈고, 지평선고  <b>일반고 전문계열(4)</b> 한국전통문화고, 원광정보예술고, 함열여고, 영선고  <b>일반고 예체계열(4)</b> 한국전통문화고, 원광정보예술고, 남원국악예술고, 한국마사고  ※ 밑줄 : 2개 전형 실시 교고	<b>특수목적고(1)</b> 전북외국어고  <b>자율형 사립고(1)</b> 상산고	<b>평준화고(38)</b> 전주(23교):전북사대부고 양현고, 전라고, 전주고, 전주술내고, 전주여 고, 전주제일고, 동안고, 완산고, 우석 고, 유일여고, 전북여고, 전일고, 전주 근영여고, 전주기전여고, 전주성대 부고, 전주성심여고, 전주영성고, 전 주신흥고, 전주중앙여고, 전주한일 고, 전주해성고, 호남제일고  <b>군산(7교):</b> 군산고, 군산여고, 군산동 고, 군산제일고, 군산영광여고, 군산중 영고, 군산중앙여고  <b>익산(8교):</b> 이리고, 이리여고, 남성 고, 원광고, 원광여고, 이리남성여고, 이일여고, 전북제일고  <b>비평준화고(54)</b> 군산(1교):한들고 익산(5교):성일고, 익산고, 여산고, 함열고, 함열여고 정읍(10교):배경고, 서영여고, 스타원고, 왕산여고, 안산고, 정읍고, 정읍여고, 장주고, 태안고, 후남고 남원(5교):남원고, 남원여고, 남원서진 여고, 성원고, 인월고 김제(7교):김제고, 김제서고, 김제여 고, 군산고, 덕암고, 만경고, 만경여고 완주(2교):완주고, 함열고 진안(3교):마령고, 안천고, 진안제일고 무주(4교):무주고, 설천고, 무풍고, 안성고 장수(3교):백화여고, 산서고, 장수고 임실(1교):임실고 순창(3교):순창제일고, 동계고, 순창고 고창(6교):고창고, 고창북고, 고창여고, 영선고, 해리고 부안(6교):백산고, 서림고, 부안고, 부안 여고, 위도고	<b>상산고(전국단위) 별도 전형일정(예정)</b> 2022.12.9.(금) ~ 2023.1.2.(월)까지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예정임
전형137교(133교)	4교	39교(중복 2교 포함)	2교	92교(중복 2교 포함)	

## 2. 2023학년도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지침(안) 주요 내용

### 가. 내신성적 반영 항목

구분	항목		배점	반영비율
교과	일반교과	1-2학년	90점	30%
		3학년	90점	30%
	체육·예술교과	전 학년	60점	20%
	소계		240점	80%
비교과	출결상황		30점	10%
	봉사활동상황		15점	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15점	5%
	소계		60점	20%
총계			300점	100%

※ 자유학기제 등으로 성취도 환산이 가능한 성적이 없는 학기의 교과성적은 반영하지 않음

※ 전기고 내신성적산출: 3학년 2학기 1차 지필고사(수행평가 제외)

※ 후기고 내신성적산출: 3학년 2학기 1, 2차 지필고사+수행평가

### 교과 성적 산출 공식

구분	학 년	교과 성적 산출 공식	배점
일반 교과	1-2	$\left( \frac{\text{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 \frac{\text{이수과목 원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times 0.01 \right) \times 15$	90
	3	$\left( \frac{\text{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 \frac{\text{이수과목 원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times 0.01 \right) \times 15$	90
	소계		180
체육 예술 교과	전학년	$\frac{\text{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times 12$	60
합계			240

※ 이수과목이란 성취평가제에 의한 성취도 환산이 가능한 과목을 말한다.

※ 교과의 성취도 환산점수 : A=5점, B=4점, C=3점, D=2점, E=1점

※ 졸업생의 경우, 세부 시행 지침(3./ 마./ 2/)에 따라 적용하되, 부득이 본 산출 공식에 따라 산출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수, 우수(체육·예술교과) : A
- 우, 보통(체육·예술교과) : B
- 미, 미흡(체육·예술교과) : C
- 양 : D
- 가 : E

## 나. 출결상황

### 1) 출결상황 산출

출결상황 산출은 결석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질병 및 기타(학교장이 인정한 결석)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일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 결석일수의 산정 기준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 2) 미인정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 산출

미인정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 산출은 이를 합산하여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한다.(3회 미만은 0일로 계산).

### 3) 점수 산출

미인정결석일수에 따른 출석점수는 아래 표와 같이 각 학년별로 산출하며 **총 30점 만점**을 적용한다.

□ 학년별 출결상황 내신점수 산출표 □

미인정 결 석 일 수	출 석 점 수
0일	10 점
1 - 3일	9 점
4 - 7일	8 점
8 - 11일	7 점
12 - 15일	6 점
16 - 19일	5 점
20일 이상	4 점

## 다. 봉사활동상황

1) 봉사활동상황 점수는 **총 15점**이며, 부여 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1회의 최저 봉사활동 시간은 1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봉사활동상황의 점수는 **3개 학년의 봉사활동 시간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내신점수를 부여한다.

□ 봉사활동상황 30시간 기준 내신점수 산출표 □

시간	30시간 이상	29-28	27-26	25-24	23-22	21-20	19-18	17-16	15-14	13-12	11-10	9-8	7-6	5시간 이하
점수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라. 행동발달 상황 및 창의적 체험활동**

- 1) 행동발달 상황 및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 총점은 15점 (학년 당 5점을 합산함)으로 한다.
- 2) 학년 당 점수 5점 중 **3점은 기본점수**로 하고, 2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산점이 2점을 초과하더라도 가산점은 2점까지만 부여한다.
- 3) 가산점 영역은 다음과 같다.

순	항 목	유형	기 준	점 수
1	학교장 표창자	행동 덕목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공로상 등의 인성과 관련한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표창별 0.5점
2	자율 활동	유공자	학급 실장, 부실장, 대의원,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동일 유공에 대해 학년별로 1회 점수 부여)	유공 항목별 0.5점
		우수자	교과와 관련 없는 각종 자율활동으로 인한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3	동아리 활동	유공자	창체 동아리활동 부장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	및 우수자 표창항 목별 0.5점
		우수자	각종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4	진로활동	우수자	각종 진로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표창항 목별 0.5점
5	기타 학교활동유공자		자율 동아리부장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	
6	가산점 부여 제외자		학교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생활지도 규정에 따른 선도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 및 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학년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1.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으로 내신점수를 산출한다.
  - 가. 행동덕목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는 표창별 점수를 부여한다. (1학년 봉사상과 공로상을 받은 경우 각 0.5점씩 1점 부여)
  - 나. 자율활동 유공자는 학년별 유공 항목당 하나만 인정한다.(3학년 때 실장과 학생회장을 한 경우 자율활동 항목 유공자로 하나만 인정하여 0.5점 부여)
  - 다. 동아리 활동은 정규교육과정 내 편성된 동아리 활동만 인정한다.**
  - 라. 3학년은 내신 산출 기준일로 표창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2. 이외 기타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한다.

**21 Wee클래스 상담실 운영**

**가. 운영 목적**

- 상담활동 통한 학생의 정서적인 안정과 심리적 발달 지원
- 학생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교생활 적응 조력
-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위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 나. 운영 방침

- 상담에 적합한 물리적·인적 환경을 조성하여 상담의 효율화 추구
- 호소문제에 따라 학생에게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개인, 집단상담 등) 제공
- 구성원의 요구도를 반영한 다양하고 유익한 상담기회 및 정보 제공
- 담임교사 및 각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운영

## 다. 운영 대상

- 자발적으로 상담을 신청한 학생
- 위기학생 및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 교사 의뢰학생
-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 본교 교사 및 학부모

## 라. 운영 세부 내용

- 운영 기간: 연중 상시 운영
- 운영 시간: 08:3 ~ 16:30
- 장소: 본교 후관 2층 Wee클래스(후관 교무실 옆)
- 상담프로그램

### 1) 개인상담

- 전문상담교사와 1:1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
- 학기 초 담임교사의 관찰 혹은 학생·학부모 상담 및 신청을 통해 상담 실시
- 상담방법: 대면상담, 전화상담

#### 상담신청방법

전문상담교사 용지 보관 → 담임교사(추천교사)확인 → 교과담임교사 확인(상담허락) →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에게 접수

※ 상담실 이용안내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년 초에 학부모 상담 동의서를 받음.

※ 상담내용은 비밀을 원칙으로 하되 비밀보장의 한계(자살·자해, 타인침해, 아동학대, 법원 및 관련 기관의 요구 등)의 경우에는 제외함.

### 2)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관심군 사후관리(상담) 및 기관연계

- 대상: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나온 학생
- 운영방법: 학생상담 및 학부모 상담 후 필요시 외부전문기관 연계 조치, 학교 내 지속적인 관리 상담

### 3) 집단상담 프로그램(요청 시)

- 프로그램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하거나 의뢰된 학생에게 실시
- 내용: 사회성 향상, 의사소통 기술 증진 등
- 운영방법: 실시할 집단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신청 또는 의뢰를 받아 실시(Wee센터 집단상담 및 외부활동)

#### 4) 학업중단 위기학생 상담

- 대상: 학업중단 징후가 있는 부적응 학생 및 자퇴 희망 학생
- 방법: 학생, 학부모 상담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보 제공

#### 마. 기대효과

- 학생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조기 발견 및 예방하여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감 향상
- 학교 부적응 학생의 문제 해결력을 높여 학교 적응 및 교육 공동체의 교육 만족도 증진
- 맞춤형 상담활동 강화 통해 건전한 학교분위기 형성

## 22

## 보건실 이용 수칙

### 1

### 보건실 운영

#### 1. 목적 및 기능

- 건강상담실, 보건관리실, 처치실, 안정실, 교육실의 역할
-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관리하며 보건교육의 핵심 장소
- 학생 건강관리에 필요한 각종 제장부, 물품의 비치 및 기록 관리

#### 2. 구급약품 비치

1) 약품의 사용은 매뉴얼을 기준으로 보건교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투여한다.

2) 의약품 사용에 있어 주목적으로 하므로 과다사용은 제한한다

3) 투약을 제한하는 경우 → 이유를 학생에게 설명할 것임

- 공복 시 복용하면 부작용이 있는 경우(위장장애 시 제외)
- 복용간격이 짧은 경우
- 약품 매뉴얼 내용을 기준으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 병원진찰이 긴급한 경우
- 침상휴식으로 호전될 것 같은 경우
- 상습 복용을 하는 경우
- 기타 보건교사의 상담과 지도로 충분한 경우

4) 약품은 반드시 **본인(교사, 학생 모두 해당)에게 직접 투여**한다.

5) 당뇨학생 투약관련

- 소아당뇨 학생에 대한 투약장소를 제공(칸막이 이용)
- 처방받은 응급약품(글루카곤등)에 대한 보관장소 제공

※코로나19 유사증상(두통, 발열, 기침, 인후통)에 대한 투약은 한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 2

## 보건실 이용

### 1. 보건실 입실

#### 1) 쉬는 시간 이용이 원칙

단, 수업 중 보건실 이용이 필요하다면 담당 교과 선생님께 보건실 입실 확인을 받고 보건실 이용

#### 2) 보건실 이용 후 보건실 방문증을 받아 담당 교과 선생님께 제출

### 2. 보건실 침상 안정 규정

#### 1) 보건실 안정시간은 최대 1시간으로 한다.(그 이상의 안정을 요구할 시에는 병원 진료 조치)

#### 2) 증상에 따라 보건교사의 직접 관찰이 필요한 경우(지혈, 호흡곤란, 골절의심등)는 처치를 우선으로 한 뒤 학생의 수업결손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교내 연락망으로 알리도록 한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침상 안정은 하지 않습니다.

♣ 부록-01 : (학부모 특강) 자유학기제의 올바른 이해

**1 자유학기제의 이해**

가. 자유학기제의 목적

- 1)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지속적인 자기 성찰 및 발전 계기 제공
- 2) 지식과 경쟁 중심 교육을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미래 핵심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

나. 자유학기제의 중점사항

- 1) 학생 선택 중심 프로그램 확대와 다른 학기와의 연계 확산 지향
- 2) 학생을 위한 수업방법 다양화, 학생 참여형 수업, 과정 중심 평가 지향
- 3) 학생을 위한 교과 내·외 다양한 학습 경험 기회 제공
- 2)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설계를 지원

다. 자유학기제 대상 학년 및 시기 : 1학년 1학기과 2학기

라. 자유학기제 활동 내용

- 1) 주제선택활동 : 교과에서 확장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수업
- 2) 예술체육활동 : 음악, 미술, 체육 과목에서 확장된 문화예술체육활동
- 3) 진로탐색활동 : 학생의 적성과 소질 탐색활동
- 4) 동아리활동 :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특기, 적성 활동

**2 자유학기제 시간표**

1학기 (85시간)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1	기본 교과(28시간), 자유학기 활동수업(5시간)				
2	○ 교육과정 : 성취 기준 기반 수업				
3	○ 수업방법				
4	- 문제해결, 의사소통, 토론, 실습, 체험 등				
	- 수업 및 활동 내용에 따라 탄력적 블록타임제				
5				동아리활동	
6		예술체육			
7	주선-기과	예술체육			진로탐색

2학기 (136시간)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1	기본 교과(25시간), 자유학기 활동수업(8시간)				
2					
3					예체(학스)
4					
5				동아리활동	
6	주선_수과		주선-영어		주선_사국
7	주선_수과	진로탐색			주선_사국

### 3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 1) 진로탐색활동 프로그램

1학기 진로탐색 프로그램 명		담당교사	2학기 진로탐색 프로그램 명		담당교사
1	자아존중감향상-나는 내가 좋아!	유 ○희 채 ○미	1	진로 디자인 역량 함양	유 ○희 채 ○미

#### 2) 주제선택활동 프로그램

1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 명	연계 교과	담당 교사	2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 명	연계 교과	담당 교사	
1	그림책으로 나를 만나다	기술 가정	1	생활속의 수학	수학	유 ○희 채 ○미
2	이하여백		2	말랑말랑 코딩여행	과학	조○하
3			3	연극으로 나를 표현하기	국어	신○교 김○자
4			4	보드게임으로 만나는 역사	사회	나○희
5			5	영어신문 만들기	영어	장○정

#### 3)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

영역	1학기 예술체육 프로그램 명	연계 교과	담당 교사	영역	2학기 예술체육 프로그램 명	연계 교과	담당 교사
예술	만화반	미술	장○연	체육	축구반	체육	신○교
예술	국악이 좋아!	음악	신○진	체육	탁구반	체육	최○원
	이하여백			체육	배드민턴반	체육	김○자

#### 4) 동아리활동 프로그램

1학기 동아리활동 프로그램 명		담당교사	2학기 동아리활동 프로그램 명		담당교사
1	영화감상부	신○교	1	영화감상부	신○교
2	건강걷기부	채○미	2	건강걷기부	채○미
3	도서부	장○정	3	도서부	장○정
4	컬러링복부	유○희	4	컬러링복부	유○희
5	몸살림운동부	김○란	5	몸살림운동부	김○란
6	또래상담부	강○경	6	또래상담부	강○경
7	탁구부	김○자	7	탁구부	김○자
8	방구석 놀이터부	박○진	8	방구석 놀이터부	박○진

#### 4 교사 기간 활동 계획

구 분		일 자		활 동 내 용	비 고
1 학 기	1차 고사	4월	26일	교과 연계 교외 체험활동( 우주로 1216 체험)	
		4월	27일	예술체육활동 수업 실시	
		4월	28일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2차 고사	6월	30일	교과 연계 교내 체험활동	
		7월	1일	교과 연계 교외 체험활동( 영어 체험센터)	
		7월	2일	교과 연계 교내 체험활동	
2 학 기	1차 고사	10월	6일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10월	7일	교과 연계 교외 체험활동 운영	
		10월	8일	교내 교과 융합 수업(주제 통합 수업) 진행	
	2차 고사	11월	29일	교과 연계 교외 체험활동	
		11월	30일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12월	1일	교내 교과별 체험 부스 운영	

## ♣ 부록-02: (학부모 특강) 정보통신윤리교육

<온라인 수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 1. 허락 없이 교사, 학생 사진을 공개하거나 얼굴 평가를 하는 경우

- 허락 없이 교사, 학생 사진을 공개할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않을 권리가 있음.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
- 얼굴 평가 등이 수반되는 경우, 내용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1, 2항 명예훼손죄(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또는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음.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70조 제1, 2항 위반이 될 수 있음.

### 2. 수업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여 의도한 발언 내용과 달리 퍼트리는 경우

- 형법상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앞에 기재한 조문 참고)
- 경우에 따라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 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저작권법상 손해배상 대상이 되고, 벌칙 규정이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목소리를 녹음하여 공포한 경우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 3. 교사, 학생 사진으로 음란한 합성사진을 제작, 유포한 경우

- 제작 시 형법 제244조 음란물 제조가 성립할 수 있음.
- 제작하여 유포 시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제 74조 제 1항 제2호 위반이 될 수 있음.

### 4. 학생이 강의 동영상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 다운로드한 강의 자료를 제3자에게 배포·전송하는 것, 제3자에게 강의 자료가 게시된 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는 것, 강의 자료에 부착된 복제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등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어 손해배상 대상이 되고 벌칙규정이 있음.

<디지털 소통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1.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반드시 한다.

2. 정기적 데이터 백업

- 물(음료수)을 쏟거나 랜섬웨어 등의 공격을 받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데이터를 여러 방법으로 저장한다.

- 전송이나 업로드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저장장치에 백업 해두도록 한다.

### 3. 선생님께 파일 제출 혹은 업로드

-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 제출한다.(그림, 폰트, 동영상 등)
- 파일 제출 기한은 반드시 지킨다. 인터넷이나 컴퓨터 환경의 문제가 예상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 준비하도록 한다.
- 전송 도중 인터넷이 끊기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제출이 제대로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수업 전】

- 가급적 빛이 잘 들고, 소음이 없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강의를 시청하세요.(가족, 반려동물, TV나 게임, 휴대폰 등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
-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듣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강의에 참여하세요.
- 미리 기기 작동을 확인하세요.(전자기기는 미리 충전, 컴퓨터/노트북/스마트폰/태블릿 작동 확인)
- 인터넷상에서 수업을 듣는 것만 다를 뿐, 학교 수업과 똑같이 수업 준비를 미리 준비합니다.  
(수업 중 이동하지 않도록 교재, 필기구를 미리 준비하고 화장실도 다녀오세요.)
- 단정한 모습으로 컴퓨터(노트북/태블릿/스마트폰) 앞에 앉습니다.
- 학급 및 교과별 선생님께 받은 수업자료는 그때그때 잘 정리해 두며, 일정들은 달력에 잘 적어 두어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 【수업 후】

- 온라인상의 언행은 직접 만날 때 보다 훨씬 더 신중해야 합니다.
- 정중한 자세로 선생님과 친구들을 대하며, 수업과 관련 없는 행동이나 불쾌할 수 있는 행동 하지 않습니다.
- 초상권을 지키는 일은 나와 타인 모두를 지키는 일입니다. 선생님, 친구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캡처하지 않습니다.
- 집에 있지만, 학교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궁금한 점은 적어 두었다가 담임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을 통해 질문합니다.

♣ 부록-03: (학부모 특강) 선행학습 금지법 안내

□ 용어 의미

용어	주체	의미
선행 교육	교육관련기관 (학교)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미리 가르치는 것)
선행 학습	학생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학생이 사교육 등을 통해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배워야 할 학교수업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
선행 출제	교육관련기관 (학교)	학교가 현재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각종 교내 시험에서 출제하는 것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됩니다.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됩니다.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유·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부록-04: (학부모 특강) 2022학년도 학부모 청렴교육 연수

**1.1 | 촌지 수수 및 불법찬조금 관련**

1. 관련 근거 : 🟡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2. 불법찬조금의 정의와 사례**

- ▶ 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학부모에게 촌지를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받을 수 없음
- ▶ 현행 초·중·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원칙을 위반하여 기금의 목적, 기금의 규모, 방법 등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없이 학부모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강제할당, 최저액 지정, 전화독촉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조성한 금품

**3. 불법찬조금의 정의와 사례**

- ①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②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③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
- ④ 발전기금 조성 안내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⑤ 학부모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⑥ 교장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 등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4.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의 구분**

< 학교발전기금·불법찬조금 비교 >

학교발전기금	구분	불법찬조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구성 명칭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
-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조성 ※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구성 방법	-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 ※ 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 학교발전기금회계에 미편입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사용 목적	- 법령에 약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 ※ 각종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회환 등

## II 청탁금지법 관련

적용 대상자	▶ 교직원(배우자), 계약직(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원, 급식보조원), <b>공무수행사인</b> (학부모위원, 학폭위원) (적용범위 :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제6조)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7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9조))
부정청탁	▶ 청탁금지법에서 제시한 14개 항목 학교는 “ <b>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에 해당됨</b> ”
부정청탁자	▶ 제재(과태료) 대상임
금품 수수	▶ 금전·숙박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금품 수수 금지	▶ <b>학부모님으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음료를 포함한 기타 물품 수수는 금지</b> ▶ 교직원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님께서 제공할 경우 제공 금품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 ▶ 전학년도 담임교사에게 금품 제공은 허용될 수 있음(졸업시) ▶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 한장처합합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경우 법 위반임 ▶ 적용대상자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임

### ♣ 부록-05: (학부모 특강) 2022 교권보호 및 교원지원 안내

## 2022 교권보호 및 교원지원 계획

교권보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교권보호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교원인사과>교원치유지원센터>자료실 탑재

### 1 추진 근거 및 배경

#### 1.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전라북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

#### 2. 목적

- 학생 또는 학부모의 폭언·폭행·협박 등 교권 침해로 저하된 교권의 확립을 통하여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침해 유형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 피해 교원에 대한 전문적 치유 지원을 통해 교권이 보호되는 학교 문화 조성

#### 3. 필요성

-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증가로 교권이 실추되고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됨
- 교권침해 발생 시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됨
- 교권과 학생인권이 공존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정착 필요
-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 체계 필요

## 2 교권침해의 개념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원의 교육권이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언론 등에 의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되는 행위

가. 교육자로서의 교육할 권리 침해

-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제약
- 관리자의 지도·감독권 남용
- 학생·학부모의 수업 방해

나.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신분 침해

- 부당한 신분·인사 상 조치
-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피해 배상 요구

다.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침해

- 폭언·폭행·성폭력 등 신체적 위해
- 명예훼손·모욕·성희롱 등 인격권 침해
- 언론기관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 3 교권보호 추진 방안

1.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시행령 제6조 ②)
  -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
  -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들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선출될 수 있도록 구성
- 목적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나. 전라북도교권보호위원회

-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시행령 제6조의2 ②)
  - 도의회 교육위원, 교육국장, 교원, 변호사 등 교육활동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

- 목적
  - 교육감의 교육활동 보호 시책 자문·심의
  - 교육활동 침해 사건 조사·관리 및 분쟁 심의
  - 단위학교에서 처리되지 못한 분쟁 조정

## 2.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및 대응

### 가.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지도·감독 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됨

### 나. 교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 학교장은 교권보호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 교권침해 관련 분쟁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중재를 통한 해결 권장
- 학생 및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법률에 의해 금지된 위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용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 교육활동 침해 사건 발생 시 은폐 금지 및 상급기관 의무 보고
-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의 경우 경찰 신고 및 적극적인 형사 고소·고발 대응

## 3. 교권침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 교육 실시

### 가. 교육의 정례화

- 초·중·고·특수학교에서는 1년에 2회 이상 교권침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 교육 실시

### 나. 교육의 방법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단위로 별도 교육 실시
- 학생의 경우 학급 단위 교육을 권장
- 학부모 교육은 학교 참여활동과 연계 실시 가능
- 교권보호 업무지원단을 활용 교육 실시
- 가정통신문을 활용하여 교권침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 홍보

### 다. 교육 내용

- 학생 대상 교육
  - 교권침해의 정의 및 유형, 교권침해 행위의 징계 및 처벌 유형, 올바른 학교 문화 조성

방법 등

○ 학부모 대상 교육

교권침해의 정의 및 유형,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유형, 자녀의 교권침해 징후,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등

○ 교직원 대상 교육

교권침해 관련 법령, 교권침해 발생 시 대응요령 등

## 4 기대효과

- 교권침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으로 교권보호 체제 구축
- 교권침해 예방을 통한 교원 사기 진작
-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 대처로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으로 교육력 제고

### ♣ 부록-06 : (학부모 특강) 학교폭력 예방 교육



## 학교폭력 예방 연수

###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 2.

## 학교폭력 유형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예시 상황
신체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해</li> <li>• 폭행</li> <li>• 감금</li> <li>• 약취 · 유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li> <li>▪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li> <li>▪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li> <li>▪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li> </ul> <p>→ 장난을 빙자해서 고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방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p>
언어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예훼손</li> <li>• 모욕</li> <li>• 협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li> <li>→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li> <li>▪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li> <li>▪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li> </ul>
금품 갈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li> <li>▪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li> <li>▪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li> <li>▪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등</li> </ul>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제적 심부름</li> <li>• 강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li> <li>▪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li> </ul> <p>→ 숙칭 바바리맨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스스로 자해하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는 경우 등이 강요죄에 해당</p>
따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돌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li> <li>▪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li> <li>▪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li> </ul>
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행 ·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 삽입하는 등의 행위</li> <li>▪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li> <li>▪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li> </ul>
사이버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 따돌림</li> <li>•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li> <li>▪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li> <li>▪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li> <li>▪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li> </ul>

### 3.

## 학교폭력 처벌 유형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나 자신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무엇보다 무겁게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1.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다. 학교에서의 봉사: 화단정리, 교실의 교구정리, 화장실 청소, 장애학생 등교 도우미 등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정해진 기간 동안 해야 합니다.

라. 사회봉사: 복지시설, 관공서에서의 봉사활동 등을 정해진 기간 동안 해야 합니다.

마.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폭력적인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 내외 특별 전문가에게 일정기간 동안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바. 출석정지: 일정기간 동안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제한이 없어, 누적될 경우 유급도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특히, 다음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교장선생님이 ‘출석정지’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 <<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

-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 ▶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사. 학급교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급에 있는 경우, 가해학생은 다른 학급으로 이동

아. 전학: 가해학생은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겨야 합니다.

자. 퇴학처분: 학교폭력의 수준이 심각한 경우, 퇴학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단,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의 사항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이 경우, 가해학생의 부모님(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4.

## 학교폭력 발생 시 학부모 대처법

### 가. 피해학생의 경우

- 1)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 학교폭력은 당신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 2)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피해사실을 은폐, 축소하지 마세요.
- 3) 힘든 내색하지 마세요. 부모가 절망하면 아이는 더 움츠러듭니다.
- 4) 도피하지 마세요. 문제회피, 침묵, 전학, 이사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 5) 아이를 응원해주세요. ‘절래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라며 지지해주세요.
- 6) 도움을 요청하세요. 먼저,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려주세요.
- 7) 증거를 확보하세요. 문자메세지, 이메일, 음성녹음, 상해진단서 등

#### 나. 가해학생의 경우

- 1) 부인하지 마세요.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
- 2) 피해학생을 탓하지 마세요. 피해학생에게서 폭력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
- 3) 정당화하지 마세요. 애들은 싸우면서 크다고 정당화하지 마세요.
- 4)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포자기 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 5) 가해사실을 확인하세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 6)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합니다.
- 7) 화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요. 전문가 상담, 봉사활동 등은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 5.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 안내

- 1) 117 학교 폭력 무료 상담 및 신고
  - ① 1 :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 ② 1 :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
  - ③ 7 : 학교폭력 자살률 1위
- 2) 온라인 신고 : [www.safe182.go.kr](http://www.safe182.go.kr)
- 3) 스마트폰 앱 : 안전드림
- 4) 문자 : #0117



## 아동학대 예방 연수

### 1. 아동학대란

구 분	정 의	비고(관련법률)
아동학대	아동(18세 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아동복지법제3조
아동학대범죄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 유기, 학대, 아동학사,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추행,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 모욕, 주거침입(주거·신체 수색)의 죄,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학교폭력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 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2. 학부모가 알아야 할 아동 학대

- 아동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아동학대입니다.
-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하는 것(방임)은 아동학대입니다.  
예) 심각한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 장애, 신체적 손상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 아동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입니다.  
예) 학생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강요된 행위는 아동학대입니다.
- 아동의 복지나 정상적인 발달(건강)을 저해하는 것은 아동학대입니다.  
예) 의식주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 등

### 3. 아동학대 예방 노력

- 자녀가 자율적인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존중받는 아이가 타인을 존중하고 책임있는 생활을 합니다.
-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과 상담을 하세요.  
※ 학교 Wee클래스나 각 남원교육지원청 Wee센터 상담 신청(☎635-8530~2)
- 가정에서의 폭력이나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에게 학습됩니다.
- 부모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4. 훈육이란

- 훈육이란 아동이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며 그 방법은 아래와 같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훈육 시 훈육자의 감정 상태는 이성적인 상태(평정심 유지 상태)여야 함

■ 합리적 훈육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아동의 행동에 대한 화난 상태나 복수를 하기 위한 상태에서의 체벌

-아동이 한 행동의 대가로 아동을 때리는 것

(예: 아동이 다른 형제나 친구를 때렸을 때, “너도 맞아 보고 아파봐야 다시는 때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복수의 의도로 체벌을 하는 것)

■ 부적절한 정서반응의 예

-아동의 고의성 없는 실수에 대해 모욕적, 경멸적, 비난, 비아냥 등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 잘못된 행동(≠고의성 없는 아동의 실수)을 교정하는 방법이어야 함

■ 훈육의 환경은 합리적이어야 함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이나 신체적인 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어야 함

-아동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체벌상황은 비합리적임

(‘맞을래’라고 하거나 둔탁한 물건이나 도구 등을 들고 협박하는 행위 등)

■ 훈육 시 어떠한 도구의 사용도 지양해야 하며, 맨손이라 할지라도 상흔(멍, 손자국, 긁힘 등)이 발생 하거나 머리, 얼굴 등의 부위를 때려서는 안 됨

## 5. 아동학대 신고요령

※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는 아래 신고처로 신고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될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 26조)

### 가. 1 STEP

-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기
- 아동 및 보호자 면담을 통해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
- 학대피해 아동이 더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고 세세한 면담은 피하기
- 학대후유증에 대해 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하고 이를 기록하기

### 나. 2 STEP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
- 아동을 안정시키고,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키기
- 성학대 아동은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기

### 다. 3 STEP

-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시 적극 협조하기
- 피해아동 및 가정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 보호 중인 피해아동의 친권자가 아동 인도 요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 취하기
-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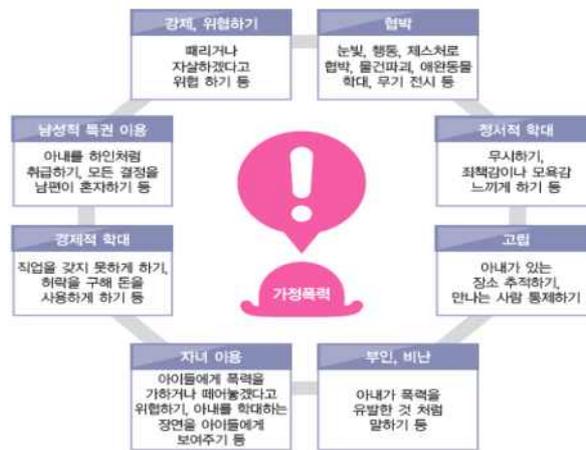
◆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635-1391~4)  
 ◆ 성학대의 경우 수사기관과 아동보호기관 동시 신고(☎129 / ☎112)



# 가정폭력 예방 연수

##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이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



## 2. 가정폭력의 예방방법

### 가. 화 조절하기

화는 폭력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화를 조절하는 데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화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화가 나는 감정이 들게 하는 상황들을 떠올려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 나. 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는 폭력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터득하여 스트레스를 다스려야 합니다.

### 다.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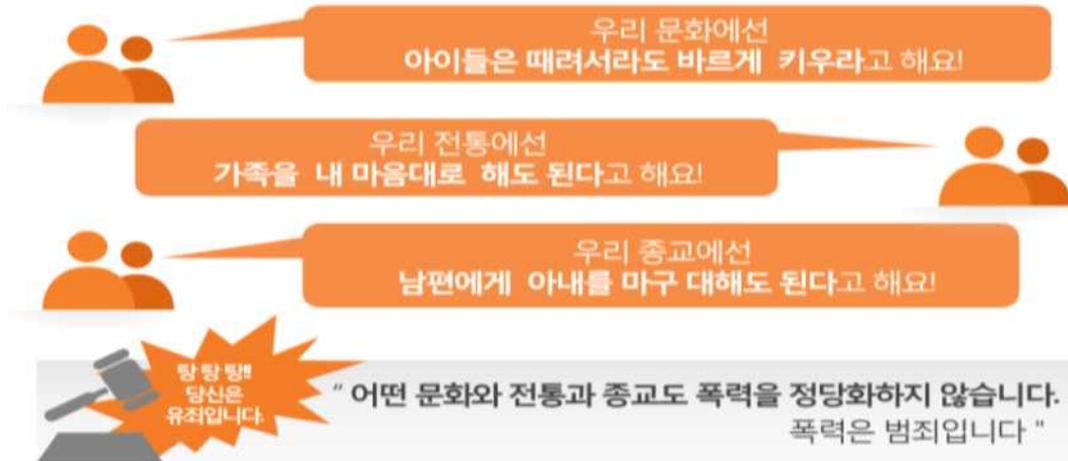
우리나라 속담에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을 통해서 서로에게 쌓인 감정들을 풀고 칭찬을 통하여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 라. 칭찬 한마디 하기

칭찬이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어색한 것도 가족입니다. 칭찬은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에 엄청난 힘을 가져옵니다. 칭찬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칭찬을 먼저 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 3. 가정폭력의 대처방법

- 1) 혹시 지금 피해자라면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 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합니다.
- 2)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조금이라도 비상금을 마련해 둡니다.
- 3)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한 장소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갈 곳과 연락할 사람을 정해둡니다.
- 4)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 4. 가정폭력 피해지원 기관



## ♣ 부록-08 : (학부모 특강) 학생 인권 증진과 인권 친화적인 학교 만들기



# 학생인권 교육

### 1. 학생인권의 이해

가. **인권**: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나. **학생인권**: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

다. **학생인권조례**: 인권의 개념과 보호의 범위는 계속하여 발전해 왔고, 학생인권의 개념 역시 통제와 훈육을 통한 보호에서 참여 보장과 자기 결정 존중의 개념으로 그 의미와 범위가 확장되어 왔다. 학생인권은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채택과 1991년 국내 비준 등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오랜 논의와 요구 안에서 자리 잡아온 것으로 이러한 노력은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로 구체화 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성적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차별·따돌림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 2. 전라북도 인권옹호관

가. **학생인권의 상담**: 친구나 선후배, 또는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학생 인권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학생인권옹호관과 상담할 수 있다.

나. **전라북도 인권옹호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해 2013년 7월에 활동을 시작한 인권옹호관 제도

- ① 학생인권문제의 상담과 도움
- ② 학생인권 보장의 시작: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다.
- ③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 학생, 학부모, 선생님과 함께 소통하며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
- ④ 학생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 모두 이용 가능

### 3. 쉽게 풀어쓴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p><b>제3조(학생의 인권보장 원칙)</b> 학생인권은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다만,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만 제한(학생의 참여로 제·개정된 학교규칙 등)될 수 있다.</p> <p><b>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b>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p> <p><b>제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b>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 <p><b>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b>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되며 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 모든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p> <p><b>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b> 학교는 두발길이를 제한하지 않는 등 학생의 개성 실현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생이 참여한 학교규칙에 따라 일정한 검사와 제한을 할 수 있다.</p> <p><b>제13조(사생활의 자유)</b> 학교는 학생의 프라이버시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나, 위험한 물건의 소지가 의심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교규칙에 따라 일정한 검사와 제한을 할 수 있으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방해의 방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p> <p><b>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b> 학교는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b>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b> 학교는 학생의 잘못을 반성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학생의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하고, 종교 교육의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p> <p><b>제17조(표현의 자유)</b> 학교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p> <p><b>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b> 학교는 학생이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b>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b> 학교는 학생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보호자에 대한 사전통지, 의견진술권 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징계는 학생에 대한 응징이 아닌 회복과 복귀를 목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징계 내용 등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p> <p><b>제30조(학생에 대한 인권교육)</b> 학교는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b>제31조(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와 지원)</b> 학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b>제32조(보호자의 권리와 교육)</b>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인권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p>
---



## 학생인권존중 행복한 학교교육



### 1. 학교는 누구에게나 인권이 실현되어야 할 교육공동체여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권을 누려야 할 주체가 모든 사람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한 개인이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가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세워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폭력과 차별, 따돌림이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직원과 학부모는 물론 학생도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 2. 학교는 학생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규칙을 학제·개정해야 합니다.

학생은 훈육과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결정권을 가진 '교복 입은 시민'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학생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고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자치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학생의 요구와 의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학교규칙 제·개정의 경우 반드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공동체 합의에 의한 학교규칙이라 하더라도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민주적 절차와 내용을 통해 정한 공동체의 약속에 대해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교규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학교는 구성원간의 갈등과 대립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학생간의 폭력, 교사에 의한 차별,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력 등 학교에서의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에 의해 징계 조치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 상호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욕설·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고운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 4.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학생은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휴대폰 등 개인 소지품을 소지 및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학교규칙으로 그 소지 및 사용의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일괄적인 수거와 사용 금지보다는 학생 스스로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 5. 학교는 '규율과 통제'가 아닌 인권친화적인 '행복한 등굣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행복한 등교 길'은 학교규칙의 단속과 통제의 수단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의 존중, 반감, 격려, 활력, 공감, 평화 등의 긍정적 감정을 키워가는 실천의 장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 행복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배움

- **인권이 상호 존중 되는 학교 공동체**
  - 자유, 상호존중, 평등, 다양성이 꽃피는 학교
-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
  - 소통과 공감, 평화적 관계 맺기, 평화적 문제 해결, 안전
- **민주적 학교 공동체**
  - 자치와 참여,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책임 있는 민주 시민이 성장하는 학교



## ⇒ 고산중학교 생활 규정 안내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고산중학교(이하 본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항(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한다.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 제2장 권리와 의무

**제4조(권리)** 본교의 학생들은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다.

1. 학교 생활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와 존중받을 권리.
2.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릴 권리.
3.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
4. 자신의 행위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5. 출신, 성별, 성적, 외모, 종교의 차이,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6.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범 받지 않을 권리.
7.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할 권리.
8.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

**제5조(의무)** 본교의 학생들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생명체들과 함께 살아갈 의무.
2.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을 존중해야 할 의무.
3.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을 의무.
4. 교사의 수업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
5.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존중해야 할 의무.
6. 준법 정신을 갖고 법과 학교에서 정한 규칙과 약속을 준수해야 할 의무.
7. 친구, 선후배를 존중하며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
8. 학교 생활 환경을 소중히 하고 학교 내 공공 기물을 소중히 다룰 의무.
9.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
10. 바르고 고운 말을 쓰고 건전한 통신 문화를 꾸려나가야 할 의무.
11.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비방, 헐뜯는 등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제6조(학교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1.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2.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3. 학교의 장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학생에게 학기당 2시간 이상,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 제3장 학생생활

**제6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1.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2. 따돌림, 폭력 등 학교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3.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4.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5.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6.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해서는 안 되며,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8.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9.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10.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1.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 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3.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4. 방과 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즉시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6.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2.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 **제9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1.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한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2.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제10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1.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2.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 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3.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4.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5.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말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6.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7.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8.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9.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10.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 **제11조(휴식시간과 여가활동)**

1. 학교의 장,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을 보장한다.(추가)
2.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여가시간에 컴퓨터실, 음악실, 강당, 도서관 등의 특별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규칙을 지킨다.(추가)
5.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6.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7.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8. 교정에서 일과 중 휴식시간에 자전거,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다.

9.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10.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11.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9. 기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 매체물·약물·문건 등

**제13조(소지품 검사)**

1. 학생과 교직원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그것을 사용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2.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제12조 제1항이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② 제12조 제7항이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다른 사람과 흡입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3. 소지품을 검사할 때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하여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간결하고 신속하게 한다.
4.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는 먼저 대처하고 나중에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14조(학생 개인물품 관리)**

1. 제12조와 제13조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현행법상 청소년이 소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물품은 학교가 보관하며, 즉시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교가 보관하고 있음을 알린다.
2. 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학생의 물품은 5일 이내에 보호자와 상담한 후 즉시 보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교육활동 시간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사가 보관할 수 있다.

### 제15조(용의 복장)

1. 등하교시 교복착용을 권장하되 자율적으로 입을 수 있으며,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복을 입는다.
2. 두발 길이, 매직, 파마는 허용하고, 염색은 밝은 갈색까지만 허용한다. 단, 고데기, 헤어드라이기와 같은 열기구는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교내 반입을 금한다.
3. 연한 화장(비비, 썬크림, 틴트,눈썹)까지 허용한다. 단, 수업시간에 화장을 하거나 거울을 보지 않는다. 학교는 학년초에 학생 시기의 올바른 피부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4. 손톱의 투명 매니큐어는 허용한다.
5. 피어싱(귀)과 귀걸이를 허용한다. (단, 귀걸이 포함 한 귀에 최대 3개까지만 허용)
6. 시력보호용 렌즈는 허용하나 미용 목적의 써클렌즈 착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7.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8.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제16조(사이버 생활) 예절 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8.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 제17조(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는 교육 활동에 전념하도록 등교 시 담임교사가 수거하여 하교 시에 나누어 준다. 단 필요로 하는 경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고 반납한다.
  - ①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을 단계적으로 거친다.
  - ② 제17조 제1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제18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19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행동개선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생생활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7.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20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1.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2.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①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 ②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 ③ 적절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 ④ 적절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 ⑤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 ⑥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⑦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3.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교외 생활)**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중학생으로서 출입이 금지된 구역(다방, 유흥장, 전자오락실, 기타)에 가지 않고, (필요한 경우 학교에 반드시 사전 허락을 받도록 한다.) 불법 취업을 금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학생 서로 간에 상행위를 금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건전한 놀이(화투, 카드놀이 등)를

- 하지 않아야 한다.
7. 절도 및 갈취를 하지 않는다.
  8. 흡연 또는 음주, 건강에 좋지 않은 약물 복용은 하지 않는다.
  9. 보호자 허락 없이 가정을 떠나 등산, 캠핑, 외박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10. 하교 시 예정된 시간에 귀가하지 못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귀가 시간을 가정에 알리고 허락을 받도록 한다.
  11. 교통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신호등, 횡단 보도, 우측 통행) 길가에서 위험한 놀이를 하지 않는다.
  12. 등.하교 시 불량배에 의해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하였을 때는 즉시 인근 파출소나 학교 선생님에게 신고한다.

### **제22조(보호자의 책임 및 의무)**

1. 책임 :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학생의 보호자가 책임진다.
2. 의무 :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 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 **제4장 고산중학교 학생회 규정**

### **제1절 총칙**

**제23조(명칭)** 학생회는 학급 학생회, 전체 학생회로 구분하여, 각각 고산중학교 학급 학생회(이하 학급 학생회), 고산중학교 학생회 또는 총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24조(목적)** 학생회는 회원의 권리와 복지를 신장하고 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또는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26조(기구 및 조직)** 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 및 조직을 둔다.

1. 학생총회
2. 대의원회

3. 학급자치회
4. 운영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기타

### **제27조(권리 및 의무)**

1.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 등을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3. 학생회는 자치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4. 학교 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갖는다.
5. 학교의 운영 및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6. 회원은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제2절 역할과 기능**

### **제28조(역할)**

1.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심의 의결한 사항을 추진한다.
2. 학생회 활동 예산편성 집행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학생의 의견 요구를 수렴하여 대변한다.
4. 학생의 인권과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축제 및 학교 행사를 능동적으로 기획 및 추진한다.
6.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의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 **제29조(기능)**

1. 학교 생활(교과 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복지, 기타)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
2.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3. 학교에 대한 건의를 위한 의견 수렴 및 전달
4.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학생의 인권 · 복지 · 생활 관련 안전에 대한 협의 및 의견 개진
5. 학생회 운영
6. 학생복지 및 활동과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기타 학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 제3절 기구 및 조직

### 제30조(학생총회)

1. 학생총회는 학생회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2. 전교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연다.

### 제31조(대의원회)

1. 학생의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2.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가. 학생회장단
  - 나. 각 학급 실·부실장
3.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4.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학생회의 사업계획·사업보고 심의 및 승인
  - 나. 예·결산 심의 및 승인
  - 다. 교육정책 제안 사항 심의
  - 라.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 처리
  - 마. 집행위원회의 각 부서 부장 및 차장 임명 동의안 인준
  - 바. 학생회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의 제·개정 안 심의·의결
  - 사. 기타
5. 대의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 가.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나. 정기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대의원 1/5 이상 또는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이를 소집한다.
  - 다. 대의원회의에서 일반 안건에 대한 의결은 재적의원 1/2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라. 학생회 업무담당교사는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학교에 전달한다.
  - 마.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제32조(운영위원회)

1. 학생회 운영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학생회장, 부회장 및 각 부서의 부장과 부원으로 한다.
3.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가. 학생복지부: 학생 인권 및 복지 관련 사항
  - 나. 문예부: 학술,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 다. 봉사부: 교내 외 환경 개선 및 봉사활동 안내 및 추진 관련 사항
  - 라. 소통부: 학교 및 학생자치활동 홍보, 학생 간 갈등 중재, 기타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위원회를 둔다.

2. 구성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은 각 학급에서 1명 내외의 추천 또는 지원을 받아 7~9명으로 선출한다.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 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3. 이 규정의 선거관련 위임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 제4절 선거

**제35조(선거일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14일 전까지 선거 일시 등 선거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학교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제36조(선거인 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이때 선거인명부는 각 학급 명렬표로 대신할 수 있다.

### 제37조(학생회장단 후보 등록)

1. 회장단에 입후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가. 선거 공고일 현재 학생회 회장 후보는 2학년(차기 학년도 3학년), 부회장 후보 1인은 2학년(차기 학년도 3학년), 부회장 후보 나머지 1인은 1학년(차기 학년도 2학년)으로 한다.

나. 학생회장단 후보는 소정의 양식에 1~2%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학생회장단 후보자에 대한 중복 추천은 불가하다.

다. 학생회장단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 등록일 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후보자 추천서, 후보자 등록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받는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서류를 심사하여 주요 사실에 허위가 있거나 후보로서 부적격한 경우에는 무효처리하고,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3. 후보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첨 등의 공정한 방식으로 후보 기호를 결정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 및 후보 기호 결정 후, 그 결과를 학교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 제38조(학생회장단 선거 및 당선자 결정)

1. 투표는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2. 선거인의 1/2 이상이 투표하여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준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또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3. 학생회장단 선거는 해마다 실시하며, 임기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4. 대의원회의의 결정으로 선거 시기 및 학생회장단 임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제39조(학생회 각 부서의 부·차장 인준 및 임명)**

1. 학생회장은 각 부서의 부장 임명동의안을 제27조 대의원회에서 인준 받은 후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동의안은 임기 개시 이후 첫 번째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2. 각 부서의 부장은 3학년으로 한다.

### **제40조(학생소환제)**

1. 총학생회장단이 유권자의 의사를 현저하고 명백하게 대표하지 못하는 등 그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학생소환을 통해 해임할 수 있다.
2. 해임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학생총투표로 하며, 총학생회장단을 대상으로 한다.
3. 해임안 발의 정족수는 대의원 재적 인원의 1/3 이상으로 하고, 가결 정족수는 대의원 재적 인원의 2/3 이상으로 한다.
4. 해임안 발의와 함께 총학생회장단의 직무가 정지되며, 대의원총회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5. 해임안이 대의원총회에서 가결될 경우, 학생총투표를 실시한다.
6. 해임안의 학생총투표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인원의 1/2 이상으로 한다.
7. 해임안은 학생총투표 가결 즉시 발효된다.
8. 해임안이 학생총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총학생회장단의 권한과 직무는 즉시 회복된다.
9. 학년학생회 및 학급학생회의 소환도 위함에 준한다.

**제41조(재선거)** 해임을 당하거나 사임한 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전체 임기의 1/2 이상일 경우 재선거를 하며, 1/2 미만일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임무를 대신한다.

## **제5절 예산 및 결산**

### **제42조(예산)**

1. 학생회의 예산은 학교에서 지원한 예산과 후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편성한다.
2. 학교는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필수적으로 편성하고, 학생자치 담당교사에게 개산급 지급을 통해 예산을 운영한다.
3. 운영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고,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3조(결산)** 학생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 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5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징계

### 제44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1. 학생의 생활교육과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인성인권부장, 교무부장, 상담업무담당교사, 교내생활계교사를 위원으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협의 시에는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인성인권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나 담임교사에게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듣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45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인성인권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 제46조(징계의 원칙)

1.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2.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3.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4. 학교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학교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6.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제47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 봉사 : 학교생활위원회에서 협의한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가정학습)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5. 강제전학 조치 : 본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것을 말한다. - 삭제 여부 확인 필요

6.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48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 봉사 :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수업 전후, 점심시간 등) 생활지도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위탁하여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위탁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4. 출석정지(가정학습) : 해당 학생은 가정학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님의 보호·감독이 어려울 경우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5. 전학조치 : 징계의 최종 단계로 전학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전학조치를 할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삭제 여부 확인 필요

※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이수는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며, 학교나 해당 기관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제49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품성, 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 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50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1.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여부와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4.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 교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 **제51조(전학조치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1. 학교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전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가.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나. 피청구인
  - 다. 전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 라.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 **제52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1.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2.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3.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제53조(사후 조치)**

1.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2. 전학조치를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에 의거하여 전학할 수 있다.

#### **제54조(장애학생 대상 징계)**

1. 특수학급·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일반학교 또는 일반학교(다른 학교 재학하는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적용)에 적용 된다.
2.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3.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을 격리조치 할 수 있다.

### 제55조(장애학생의 보호)

1.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를 이유로 불쾌감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폭력 및 차별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조(징계의 기준)** 학교생활규정 재·개정 방향이 제시한 관련 근거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전북학생인권조례 19조 2항의 절차를 거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6장 규정의 개정

### 제57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1.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10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제58조(개정안의 발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가.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나. 재직 교원의 과반수
  - 다.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라. 학생회 대표(학생회 의결서 첨부)
  - 마.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2.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59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0조(심의 및 결정)**

1.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61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1년 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교무회의 및 학생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징계 기준

구분	항	행위 내용	징계 내용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전학 권고)
예절	1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	○	○	○
	2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 학생	○	○		
준법	3	공공 문서를 위·변조하거나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	○	○
	4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6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7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8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수업	9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10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	○		
	11	시험 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훔친 학생	○	○	○	○
약물	14	교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한 학생	○	○		
	15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폭력	16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깨뜨리는 일체의 행위	○	○	○	○
	17	흉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	○	○	○
	18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	○	○	
	19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스토키 행위를 한 학생	○	○	○	○
금품	20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한 학생	○	○	○	
기타	22	소지 및 사용 불가한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 (12조, 18조)	○	○	○	
	23	학습 기자재(컴퓨터)를 학습 목적 외로 사용한 학생	○	○		
	24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동일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을 한다.	○	○	○	○
	25	징계 기준 외의 것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	○	○	○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 '교육활동 침해행위'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제2조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2. 교육활동 침해 기준

교육활동 침해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침해행위 유형	개념
상해/ 폭행	상해: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간접적인 힘을 행사하여 다치게 하거나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행위
협박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모욕: 공연히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손괴	타인의 물건,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망가뜨리거나, 숨기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심을 유발하는 행위
불법정보 유통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②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국·공립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공무)을 방해하는 행위 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적극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속이는 것) 또는 위력(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힘)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언동(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및 교육부장관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유형일지라도 학교장이 교권존중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제1항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3.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가. 관련 근거: 교원지위법 제18조, 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나. 적용 대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자로 판정된 학생

#### 【침해 학생 조치기준】

##### 교원지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 1호 학교에서의 봉사
- 2호 사회봉사
- 3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4호 출석정지
- 5호 학급교체
- 6호 전학
- 7호 퇴학(고등학교만 해당)

- **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자도 참여 의무**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 성폭력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 1 성폭력 예방 준수사항 : 자녀와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성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다.
2. 성폭력을 하는 사람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평소 친절하고 예의바른 사람이 많다.
3.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 보다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 길을 이용해서 다닌다.  
⇒ 혼자 다니는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되도록 둘 이상, 친구와 함께 다닙니다.
4. 타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을 때, 싫은 느낌이 있는 경우 단호히 싫다고 이야기한다.
5. 의도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경우를 경계하라.
6. 위급한 상황일 경우 집기나 가재도구로 창문을 깨뜨려 외부에 알리는 것이 좋다.

###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

1. 배우고, 가르치고, 연습해야 합니다.  
: 자녀의 성적발달 등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며,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위험 신호 등을 알고 현재 어려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2. 건강하고 모범적인 경계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성적으로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3.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No"가 존중되는 경험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많은 대화가 자녀들의 안전을 지킵니다.
4. 자녀에게 성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접촉과 용납할 수 없는 접촉에 관하여 분명하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5. 부모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전문교사나 상담기관을 찾아갑니다.

### 3 성폭력 예방을 위해 자녀들을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1. 성폭력 예방을 위해 자녀들을 올바른 성가치관을 갖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 타인에게 성적인 행동을 강요하지 마라
  - 상대방의 거부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 성폭력은 범죄행위임을 명심해라
  - 불쾌하거나 나쁜 접촉은 장난이라도 하지 마라
  - 너의 성가치관, 행동에 기준을 가져라
  -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방은 너와 다를 수 있음을 알아라
  - 너를 소중히 여겨라
  - 부모가 항상 너의 편이며 너를 사랑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2. 성폭력 피해 도움 청할 수 있는 곳
  - 여성 긴급전화 ☎ 1366
  - 청소년 상담전화 ☎ 1388
  - 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 ☎ 117

## 4 디지털 성범죄 및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



### 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저장, 유포, 유포 협박, 전시·판매하는 등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일컫는다.

### 2. 디지털 성폭력 유형

<b>언어 성폭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거나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글을 올려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li> <li>■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언어로 성폭력을 시도하는 행위</li> </ul>
<b>이미지 성폭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이나 음향, 합성사진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채팅 대화방, 사이트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이루어짐</li> <li>■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찍은 선정적인 사진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동영상을 유포시켜 그 사람의 명예까지 침해하는 사례</li> </ul>
<b>성적 사이버 스토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상에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집요하게 성적 만남을 시도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심, 두려움 등을 유발함</li> </ul>
<b>사이버 성희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li> <li>■ 이메일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 폭력적인 내용의 글이나 영상물을 발송하는 행위</li> </ul>
<b>사이버 청소년 성매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게시판이나 채팅,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들을 유혹하여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알선하며 현실에서 성적인 만남을 유도하는 행위</li> </ul>

### 디지털그루밍 대처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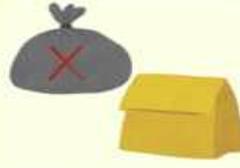
- 나이, 주소, 학교, 아이디,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 제공 요청
-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 대가를 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람
- 따로 메신저로 연결하자고 제안
-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따로 만나자고 제안
- 사진 및 동영상 제공 요청

거절하고 이런 제안이 있었음을 보호자에게 말하기



### ※ 성폭력 피해 시 대처방안

- 가. 성폭력을 당한 경우: 내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님, 선생님 등 주변 어른에게 꼭 말하세요.  
 나. 기록하기 : 성폭력 당시 주변 상황이나, 가해자에 대한 내용을 그림이나 글로 자세히 적어 둡니다.

 <p>입었던 옷, 소지품 그대로 보관하기</p>	 <p>옷을 종이 봉투에 넣기 (플라스틱 백이나 비닐 봉투에 넣지 않기)</p>	 <p>샤워, 목욕, 질 세척, 손 씻기, 현장 청소 하지 않기</p>	 <p>음식을 먹거나 음료수 마시지 않기</p>
--	---	---	---

다. 증거남기기 : 병원 진료(48시간 이내 방문)를 받기 전까지 성폭행의 증거를 남겨둡니다.

## 가정내 양성평등 교육

### 1 가정 내 양성평등 교육

#### 1. 양성평등의 개념

-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손상당해서는 안 되며,
-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며,
- 가족과 사회의 번영에 동참하는 길이 봉쇄되어서는 안 되며,
- 인류에 공헌할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막혀서는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 2.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양성에게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남녀 모두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3. 양성 평등 교육의 목적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역할 고정관념의 문제점을 깨닫게 하고 양성 평등 의식을 키워줌으로써 남녀가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며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함에 있다.

#### 4. 가정 내에서 부부간의 평등

##### 평등한 부부란?

- 남편과 아내의 시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설거지나 아이를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 여성도 남성만큼 사회활동과 여가시간을 가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부

#### 5. 가족의 변화는?

- 급변하는 사회적 조건에서 변화에 잘 적응하는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다
- 비혼 세대,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다문화 가족 등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다
- 가족 내 갈등은 가족 경험의 과정이다.

#### 6. 자녀양육.교육에 있어서 평등

- 자녀에게 격려, 칭찬, 꾸지람 등을 할 때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하십시오.
- 예절이나 단정한 용모는 남녀가 모두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차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녀 공동의 책임이자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 진로, 학업 선택 시 남녀 영역이 따로 있다는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 아들이 친절하고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라면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감성을 키워줘야 합니다.

## 흡연 및 비만 예방 교육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는 데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흡연율이 높으므로, 부모 자신이 담배를 피우면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을 그만큼 단축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 1 청소년 흡연의 영향

1.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정신적, 신체적 미성숙 상황에서 발암물질 및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중독성과 건강 위해의 심각성이 커집니다.
2. 청소년기 흡연자의 대다수가 성인기 흡연자로 이어지면서, 청소년 흡연자는 잠재적으로 성인 흡연자로서 니코틴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입니다.
3. 다른 약물 남용, 음주, 본드 흡입과 반사회적 행위를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흡연을 하는 학생이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키가  
평균 2.54cm 작은 편이다.



흡연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으나  
도움이 된다는 근거 없다



청소년에서의 흡연은  
우울증과 상관성이 있어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



니코틴 중독, 폐기능 및 폐성장저하,  
천식, 조기 복부 대동맥죽상경화증을  
유발하며, 이후 다른 만성 질환을  
유발합니다.



비흡연 또래에 비해  
기침, 가래, 숨참,  
천명 등의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며  
운동기능 저하가 나타납니다.



흡연은 조기 사망의 원인이며,  
성인흡연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초기 증상이 이미 초기  
성인기 흡연자에게 나타납니다.



청소년 흡연자에게서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이 많이 발견되며 (음주,  
본드 흡입 등의 행위를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약물  
과다복용 및 약물 의존도를  
증가시킵니다.

### 2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

- ◆ 부모님께서 흡연을 하는 경우,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 ◆ 자녀에게 혹은 가족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다.
- ◆ 자녀가 함께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습니다.
-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 흡연 시 발생하는 독성물질 중 가스형태의 화학물질은 벽, 가구, 옷, 장난감, 집 먼지 등의 표면에 부착한 뒤 몇 시간~몇 달 장기간 재배출(3차 간접흡연)됩니다.
- ◆ 가족과 함께 외식 시에는 금연 지정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 ◆ 자녀가 담배를 피우는지 잘 살펴주시고 금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하되 무엇보다 사랑으로 대화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 자녀와의 의미 있는 대화시간을 가지세요!  
 청소년들에게는 그 어떤 금연운동보다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 3 비만을 예방하는 건강한 생활습관과 운동

1.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세끼 식사를 합니다(가능하면 한식으로)
  2. 하루에 두 끼 이상은 단백질(살코기, 생선, 달걀, 콩, 두부 중 하나 선택)을 섭취하며, 채소는 매끼 먹습니다. 채소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며 포만감을 줍니다.
  3. 간식은 가능하면 패스트푸드 대신 과일, 야채, 우유를 먹습니다.
  4. 안먹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먹거나, 밤늦게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5.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습니다(20분 정도 식사)
  6. 과식한 경우에는 섭취한 열량을 소모하기 위해 바로 그날 운동을 좀 더 하는 것이 좋으며, 장기간 축적된 살을 빼기 위해서는 빠르게 걷기를 주 3회 이상, 30분 이상을 꾸준히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 굶거나 원푸드 다이어트는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빈혈, 키 성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비만을 예방 위해서는 **식사, 신체활동과 운동, 생활습관** 등 세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 ▶▶ 자주 먹는 음식의 열량을 알아봅시다.

음 식	열 량 (kcal)	음 식	열 량 (kcal)	음 식	열 량 (kcal)
라면 1그릇	530kcal	미역국 1그릇	40kcal	사과 1개	100kcal
짜장면 1그릇	550kcal	설렁탕 1그릇	150kcal	바나나 1개	100kcal
김밥 1줄	420kcal	시금치된장국 1그릇	40kcal	토마토 1개	40kcal
밥 1공기	330kcal	김치찌개 1그릇	120kcal	오이 1개	40kcal
감자튀김 1접시	280kcal	달걀후라이 1개	110kcal	우유 1팩	120kcal
돈까스 1개	490kcal	김치전 1개	170kcal	콜라 1캔	100kcal
피자 1쪽	250kcal	닭튀김 1개	340kcal	스낵과자 30g	160kcal
햄버거(소) 1개	340kcal	식빵 1쪽	140kcal	초코케익 1쪽	310kcal

## 감염병 예방 교육

### 1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병명	초기 증상	등교 중지 예상 기간 (의사소견에 따름)
홍역	귀 뒤에서부터 발진, 발열	발진 후 5일까지
수두	발열, 발진, 수포	모든 발진이 딱지가 될 때까지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	발열, 귀밑이 부어오름, 식욕부진	부어오른 귀밑이 가라앉을 때까지(약 5일)
인플루엔자	38도 이상 고열, 관절통, 두통, 호흡기 증상	열이 내리고 이틀이 지날 때까지(약 5~7일)
코로나19	콧물, 기침, 두통, 호흡곤란, 인후통 등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권고

### 2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 인정

1. 학생이 타인에게 전염가능한 감염병에 걸려 등교중지를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 합니다.
  - 가. 감염병이 의심되면 등교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께 전화 연락 후 병원에 갑니다.
  - 나. 병원 진료 후 감염병 진단을 받으면 담임 선생님께 전화 후 집에서 격리 치료를 합니다.
  - 다. 완치되어 등교할 때 병원에서 의사소견서 등을 받아 담임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2.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협조 사항
  - 가. 학생이 열이 나거나 기침을 많이 하는 상태로 등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친구들  
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 나. 감염병이 발생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면역력을 높여야 하는데 무리하게 등교하면 치  
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다. 해마다 감염병이 유행하고 새로운 종류의 감염병이 발생합니다.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  
으므로 단체생활에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여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합니다.

### 2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1. 등교를 해서는 안되는 경우(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 가. 학생 본인이나 가족 중에 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나온 경우 등교중지
    -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시 등교가능. (코로나 의심 증상이 없어야함)
    -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또는 선별진료소 PCR검사 결과 음성 시 등교가능
  - 나. 학생 본인이 37.5 이상 발열, 인후통, 콧물, 기침, 두통, 근육통 등의 의심 증상시 등교중지
    - 증상이 사라질때까지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쉴 수 있게 해주세요.
  - 다. 형제가 양성(확진)인 경우, 학생 본인이 음성이더라도 의심 증상이 있을시 휴식하기.

## 2.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3.14부터 적용)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①	격리*(7일)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②	수동감시(10일)	3일 이내 ‘PCR 검사*’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수동감시 :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하기, 출근 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마스크 상시 착용, 다중이용시설 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월동안 한시적용)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신속항원검사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3. 학교 내 확진자 발생시 학급 학생들 검사 절차 안내

\*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 가.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경우: 정상 등교 가능(의심증상 있을시 집에서 휴식하기)  
 나.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양성 결과를 담임교사에게 알림. 자가진단어플 내 체크 후 PCR검사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PCR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가능)

## 3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 방역 수칙

1. 발열 및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등교 전 가정에서	-반드시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후 자가진단에 참여하고 등교 * 유증상자는 등교 중지 후 학교에 연락(신속항원검사 실시) * 평상시 KF80 이상 마스크 착용
1차	등교 시 (1층 출입구에서) 발열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2차	급식 전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3차	일과 시간 증상 호소 시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2. 학교 교육활동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와 학교 내 확진자 발생으로 자체 조사 결과 접촉자로 확인된 경우 학부모님께 연락 후 즉시 귀가조치 하며, 신속항원 검사 나 PCR검사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 3. 새로운 학교 방역수칙

새로운 생활 속 방역수칙	
1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2차 접종 유효기간 만료 전 3차 접종하기
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특히 감염위험시설,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 착용하기
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4	상시 환기를 원칙으로 하되, 기상상황 등으로 상시 환기가 어려운 경우 쉬는 시간마다 환기(맞통풍) 하고, 손이 많이 닿는 곳(가정내 문고리, 스위치, 전화기)은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6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을 만나지 말기

# 미세먼지 대응요령

##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10가지 학생생활실천

미세먼지를 줄이는 5가지 실천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실천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p>1. 일회용품 줄이고, 미세먼지 줄이고!</p> 	<p>1. 집에 들어오면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질로 미세먼지 씻어내기!</p> 	<p>1. 마스크 만지기 전 손씻기 2. 양 손으로 마스크의 날개를 펼치고 날개끝을 오므리기</p> 
<p>2.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C) 유지, 낭비되는 전기에너지 줄이기</p> 	<p>2. 건강상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하기! 호흡곤란시 바로 벗기!</p> 	<p>3. 고정심이 있는 부분을 위쪽으로 잡고 턱부터 시작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린다.</p> 
<p>3. 가까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먼 거리는 대중교통으로!</p> 	<p>3. 물과 과일, 야채 충분히 섭취하기!</p> 	<p>4. 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 하거나 끈을 머리 뒤쪽으로 넘겨 연결고리에 양쪽 끈을 건다.</p> 
<p>4. 운전하는 어른께는 정차 중에 시동을 꺼달라고 말씀드려요!</p> 	<p>4.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 및 외출 피하기!</p> 	<p>5. 양 손의 손가락으로 고정 부분이 코에 밀착되도록 심을 누른다.</p> 
<p>5. 공기정화식물 키우고, 나무도 심고!</p> 	<p>5.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 3번, 요리할 때는 30분 이상 환기 필수!</p> 	<p>6. 양 손으로 마스크 전체를 감싸고 공기가 새는지 체크하면서 얼굴 에 밀착되도록 고정한다.</p> 

## ♣ 부록-11 : (학부모 특강) 학생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요즘 학업성적, 친구와의 갈등, 유명인의 자살 등으로 인해 청소년 자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예방하고, 아이들이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가치를 인식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 ❖ 자살의 징후(단서)

자살징후는 자살하기 전 주변사람들에게 경고신호를 보내며, 자살 생각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거나 의사표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언어상 단서	'자살'이라는 직접적인 표현/ 일기, 편지, 작문 중에 '내가 사라질 때, 내가 없다면 사정은 나아질지도 모른다.' 등 표현	행동상 단서	갑작스럽고 명확한 행동 변화 / 단정치 못한 외모 / 학업관련 문제 / 개인의 물건 정리 / 알코올 및 약물 남용 등
환경상 요소	중요한 인간관계 단절 / 가정에서의 큰 변화(이혼, 폭력, 별거 등) / 환경적응의 어려움 / 자신감 상실 등	통합적 요소	수면과 식생활의 불규칙함 / 피곤해하며 몸이 편치 않아 병이 생김 / 사고 모임을 피하며 위축 / 우울의 조짐이 나타나고 불만이 많아짐 등

### ❖ 자살징후 체크리스트

- 평소와 달리 숙제를 잘 안 해온다.
- 수업시간에 자주 졸거나 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
- 무단 지각, 조퇴, 결석이 많다.
-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 표정이 어둡고 울적해 보인다.
- 갑자기 살이 너무 빠져 보이거나 쯤 보인다.
- 위생 및 청결상태가 좋지 않다.
-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키거나 비행행동을 한다.
- 최근 가정문제(부모 이혼, 사별, 경제적 문제 등) 또는 학교문제(학교폭력, 따돌림)를 경험했다.
- 최근 친구, 지인 등의 자살 사망을 경험했다.\*
- 일기, 노트, SNS 등에 슬픈(죽음 관련)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 '죽고 싶다',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등 자살과 관련된 말을 한다.\*
- 자해, 자살시도 경험이 있다.\*

- **최근 3개월 이내**에 위와 같은 변화된 모습들을 **3개 이상** 보이는 학생이 있다면, 담당교사에게 연계하여 상담을 받도록 함. ( \* 항목은 1개 일지라도 교내 담당교사에게 연계)

## ❖ 가정 내 위험요인 & 보호요인

위험요인	지나치게 낮은 환경으로의 잦은 이사 / 가족 내 폭력과 학대(아동에 대한 신체적·성적·언어적 학대 등) / 가족 내 의사소통 빈약 / 부모 사이 자주 언쟁이 오가며, 그로 인해 가족 내 긴장이 높음 / 부모의 별거, 이혼, 사망 / 부모가 부적절한 권위를 행사하거나, 지나치게 권위적 / 경직된 가족 분위기 등
보호요인	가족 구성원 간 좋은 관계 / 가족으로부터의 관심 및 지지 / 일관된 지도 / 가족 내 건전하고 올바른 의사소통

## ❖ 가정에서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 **충고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 자녀의 생활, 생각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한 마음으로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해야 합니다.
- **정성을 다하여 듣습니다.**
  - 성급하게 자녀의 말을 끊고, 그 이야기에 대해 비난하거나 교정하려 하지 않고, 충분히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공감하면서 적절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 자녀의 감정에 공감을 하며 웃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는 등 자녀의 말을 유심히 듣고 있다는 것을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녀의 감정을 정리해 줍니다.**
  - 아이가 이야기를 하다보면 순서나 상황, 또는 그 때의 감정이 뒤섞이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주고, 아이가 느낀 감정은 어땠는지 등을 정리해보아야 합니다.

##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 학교폭력 신고 및 전화 문자 상담 ☎117
- 생명의 전화 ☎1588-9191
- 24시간 정신건강상담 핫라인 ☎1577-0199
-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1388
- 교내 전문상담 위클래스 ☎070-4913-7218
- 청소년 SNS 상담시스템 어플 '다 들어줄 개'
- 전북광역 자살예방센터 ☎ 063)251-0650~1

## ♣ 부록-12 : (학부모 특강) 장애 이해 및 장애 인권 교육

### 1. 통합교육 이해하기

통합교육이란 장애를 가진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같은 환경에서 함께 어울려 배우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라서 살아갈 환경에 대한 요구도 같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의 시작이 바로 통합교육입니다. 환경이나 사람이 달라지면 쉽게 적응을 못하는 장애 학생의 경우, 미래에 자랄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과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고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필요로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 2. 통합교육의 교육적 효과

#### 1) 통합교육이 일반학생에게 주는 효과

-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책임감, 인권 감수성 향상에 도움이
- 인간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장애학생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
-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를 갖게 되어 더욱 다양한 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다.
- 장애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오해가 감소되어 장애인도 나와 다르지 않은 한 사람의 개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며,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게 된다.
- 장애로 인한 제한을 극복하고 성취하는 장애학생의 모습에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 2) 통합교육이 장애학생에게 주는 효과

-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 분리교육이 장애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있다.
- 진보된 교육 환경을 통해 인지 및 언어 발달의 촉진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
- 또래와 함께 공부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자아존중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 일반학급에서 정상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장애학생의 숨겨진 잠재능력을 발견하고 이를 발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관찰학습을 통하여 생활연령(일반나이)에 적절한 행동의 습득기회를 마련해 주어 장애학생의 사회성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우정을 발전시킬 수 있다.

### 3.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인'인가요?

- ☑ 특수교육대상자와 장애인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학생이라도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학생이면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교육적 요구'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장애인이어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의 범주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입니다.

### 4. 장애인과 함께하는 에티켓

- ☑ 도움을 주고 싶을 때는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 ☑ 장애인은 나와 다르다는 생각을 버리고 똑같이 대하여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 ☑ 장애자, 불구자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이야기 할 때 가능한 상대방 눈높이를 유지하고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 ☑ 장애인을 집단화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 ☑ 감정의 표현이 조금 서투를 뿐 우리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배려해야 합니다.

## 5. 사례로 보는 장애 학생 인권 침해

- ㄹ 욕하고 무시하고, 장애 학생이 혼자 있을 때면 이유 없이 괴롭혀요.
- ㄹ 장난으로 때리기 게임을 하면 장애 학생이 더 많이 지니까 명이 들어요.
- ㄹ 장애 학생의 걸음걸이를 흉내 내며 웃어요.
- ㄹ 청각장애 학생의 말을 따라서 해요.
  - 내가 던진 작은 돌이 그 사람 마음에는 큰 바윗덩어리가 된답니다.
- ㄹ 통합학급 교사가 장애 학생의 수업에 무관심해요.
- ㄹ 수련회, 현장학습에서 장애 학생은 특수교사 선생님하고만 다니라고 해요.
- ㄹ 특수학급에서 하는 사회적응활동을 못하게 해요.
  - 교육적 방임도 인권 침해예요!
- ㄹ 동아리 활동을 선택할 때 학생의 의견을 묻지 않고 선생님이 마음대로 결정해요.
- ㄹ 또래 도우미 선택에서 장애 학생에게는 누구와 짝꿍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지 않아요.
  - 장애학생에게도 의사결정권이 있어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 학생의 보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2(장애 학생의 보호)
  -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 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장애를 가진 학생은 자신의 의사 표현·자기방어·사회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쉽게 학교폭력에 노출될 수 있고 폭력에 노출되면 자신을 보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사회적 약자인 장애 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부과 후 가중 및 경감 단계에서 피해자가 장애 학생인 경우 그 조치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 ♣ 부록-13 : 고산중학교 학부모회

### ○ 목적

고산중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사업

#### ○ 학교교육 모니터링 등 학교운영 참여

-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 카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학부모의 의견수렴

#### ○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 학교교육 지원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 현장체험학습 보조 등

- 우리아이 보호활동: 등하굣길 안전지도, 학교주변 유해업소 점검 등

#### ○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 자녀교육지도: 진로 및 진학지도법, 인터넷 중독 예방법,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대처법, 자기주도적 학습지도, 창의.인성교육 지도,

- 교육정책이해: 입학사정관제, 고교다양화에 따른 고교유형별 특징

- 학교교육참여: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참여, 자원봉사 참여방법

#### ○ 기타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

### ○ 회원

고산중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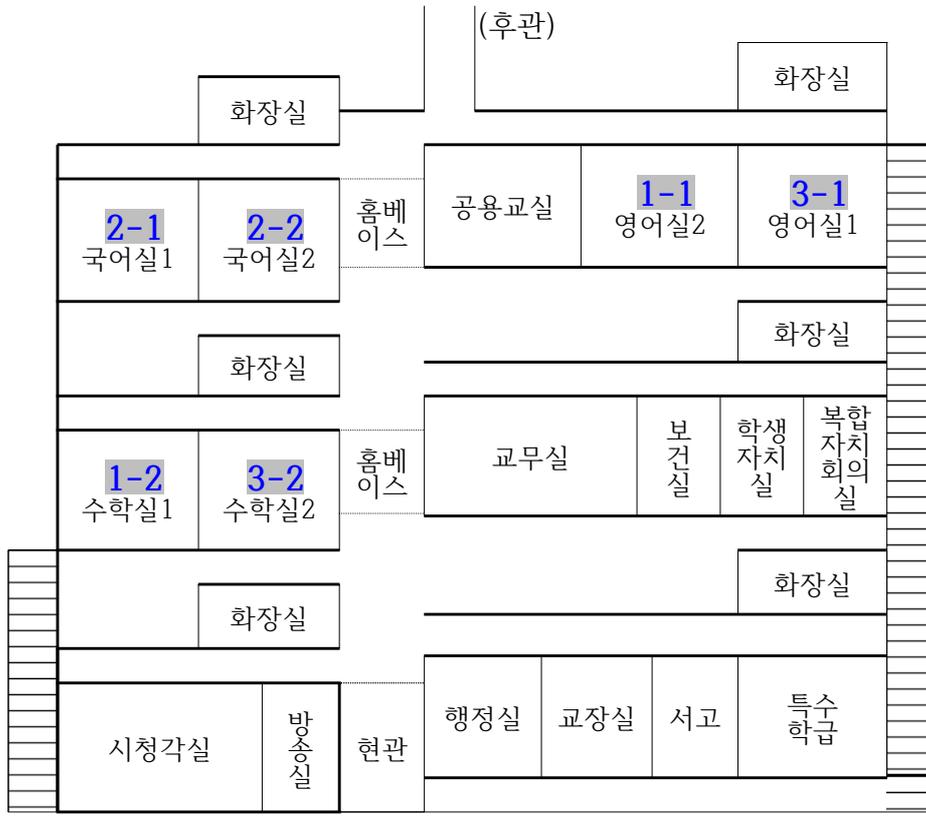
### ○ 구성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학부모회, 학급학부모회를 둔다.

♣ 부록-14 학교 안내도(교실 배치도)

학교 숲

미술실	사회 과실	도서관	2교 무실	상담실	컴퓨터실	음악실	준비실	화장실	
기술 가정실	준비실	과학실2	준비실	과학실1	현관	홈베이스	급식실	서고	화장실



(본관)

강  
당

교  
문